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學位論文

일제하 在日 王公族의 형성배경과 관리체제



2009年 8月

釜慶大學校大學院

史學科

金基輝

文學碩士學位論文

일제하 在日 王公族의 형성배경과 관리체제

지도교수 申明鎬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年 8月

釜慶大學校大學院

史學科

金基煇

김기훈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9년 8월 26일



主 審 文學博士 朴花珍 印

委 員 文學博士 李根雨 印

委 員 文學博士 申明鎬 印

【 목 차 】

Abstract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현황	4
II. 왕공족 渡日정책의 배경과 과정	9
1. 왕공족 도일정책의 시작-영친왕의 일본유학	9
2. 고·순종의 죽음과 왕공족 도일정책의 가속화	21
III. 재일 왕공족 관리체제의 실상	34
1. 재일 왕공족에 대한 처우	34
2. 관리조직의 운영	57
IV. 결론	77
참고문헌	82

【 표 목 차 】

<표1> 韓國皇太子殿下附 직원 현황(1908년 5월 1일 현재)	14
<표2> 일제시대 조선왕실 가계도	31
<표3> 「왕공가계범」에 규정된 왕공족의 범위	44
<표4> 영친왕 도일 후 일본 내 관리기구의 변화	58
<표5> 순종代의 이왕직	60
<표6> 영친왕代의 이왕직	60
<표7> 이왕직 본청 소속 직원(1930년 1월 1일 현재)	61
<표8> 일본 궁내성의 皇族附職員	64
<표9> 일제시기 이왕직 본청 조직의 변화 과정	65
<표10> 이건·이우代의 공가 사무소 조직	73

The Formation Background and Management System of Wanggongjok Residing in
Japan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Ki Hun Kim

Departmen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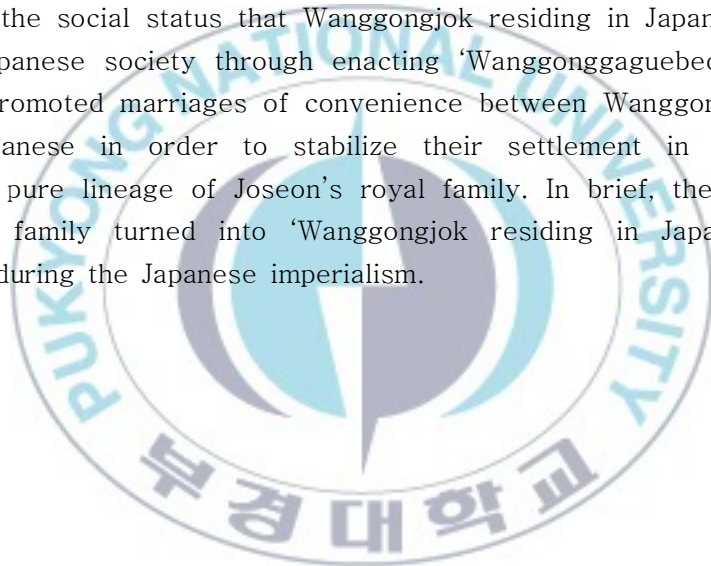
Japan tried to increase its psychological control over the people of Joseon during its colonial ruling over the nation. It is because Japan judged that the people of Joseon with strong national consciousness would be hard to be managed simply by suppressing them with military force or economic power like other Western Great Powers. Japan induced the people of Joseon to accept its colonial ruling from their heart. In order for new ruling power to gain psychological agreement from its ruled party, however, it is inevitable to disconnect the link between the previous ruling power and the people beforehand. After getting rid of the royal family's psychological control over the people of Joseon, Japan had to settle down in the position instead of the royal family.

Along with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Japan assigned to the royal family of Joseon a new social position, 'Wanggongjok (王公族)'. Japan also newly built an organization, 'the Office of Yi Royal Family (李王職)', and it took whole charge of the tasks related to Wanggongjok. Although Japan granted the royal family the privilege equivalent to that of Japanese imperial family, there existed great pressure and supervision on the other side.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how Japan explicitly treated the royal family of Joseon favorably in this way but also weakened it at the same time. This is also the consideration on the process of how Japan dismantled the royal family's psychological control over the people of Joseon.

A crucial theme selected for this work is 'Wanggongjok drawn into Japan by force'. The descendants of Joseon's royal family including Yeongchinwang, Yi Gun, Yi Woo and Deokhyeongju in their teens left for Japan at an early age under the

pretext of studying abroad. They were the core persons that would newly consist of the royal family soon after the death of King Gojong and Sunjong. Since the two kings' psychological control over the people of Joseon had been already solidly established, it was almost impossible for Japan to remove the tie between them. Therefore, setting them aside, Japan also attempted to separate the next-generation Wanggongjok completely from the people of Joseon through its thorough management. Japan's policy to exile Wanggongjok from Joseon was operated in this background.

After immigrating the successors of Joseon's royal family forcibly to Tokyo, Japan faced a difficult problem of how to absorb those into Japanese society. Thereupon, Japan clarified the social status that Wanggongjok residing in Japan would come to have within Japanese society through enacting 'Wanggonggaguebeom (王公家軌範)'. After that, it promoted marriages of convenience between Wanggongjok residing in Japan and Japanese in order to stabilize their settlement in Japan and also disconnect the pure lineage of Joseon's royal family. In brief, the descendants of Joseon's royal family turned into 'Wanggongjok residing in Japan' by Japanese elaborate plan during the Japanese imperialism.



I. 서론

1. 연구목적

20세기의 역사는 군주제가 점점 축소화되는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공존했던 격동의 이 시기에 세계 곳곳에서 강력한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무수한 기존의 기득권층들은 새로이 밀려든 시대의 조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1911년 三民主義로 표상되는 신해혁명으로 秦漢 이래 지속되어 왔던 중국 황제권이 무너져 내리면서 중화민국이 성립되었고,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은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힘을 보여주며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렸다. 마지막 차르였던 니콜라이 2세는 우랄 산중에서 총살당했다.

20세기 군주제의 몰락은 이러한 격심한 내적 변동과 아울러 외부적 충격을 통해서 더욱 극대화된다.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국가들을 식민지화했고, 이에 따라 기왕에 그 지역에 군림하고 있던 기득권층들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야만 했다. 이러한 세계적 조류 속에 대한제국도 예외가 되지는 못했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위로부터의 개혁도, 강력한 군주제를 지향한 황제국으로의 탈바꿈도 그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일제의 조선 식민지배가 가지는 특이성이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데 있어서 이데올로기를 통한 심적 지배력을 증가시키는데 노력했다. 여타의 서구 열강들처럼 무력과 경제력을 통한 압박으로는 강한 민족의식을 가진 조선민중들을 제어할 수 없다

는 판단 아래에서였다. 이는 1910년대 강력한 무단통치의 결과로 발생한 3.1운동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요컨대, 일제는 그들의 식민 통치를 조선 민중들이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지배 세력이 피지배층의 心的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전 지배층과 민중들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조선 왕실이 민중들에 미치는 심적 지배력을 끊어내고 그 위치에 자신들이 자리 잡아야만 했던 것이다. 때문에 일제의 입장에서 조선 왕실의 상징성을 해체시키는 작업은 그들의 식민통치의 성패를 가름할 중요한 정책 사업 중 하나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제는 조선 왕실에 자신들의 최고 지배층인 황족에 버금가는 특권을 부여한다. 그들에게 일본 황족의 禮로 대우받는 ‘王公族’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는 한편 매년 150만원이라는 歲費를 지급했던 것이다. 피식민지의 최고위층을 말살하지 않고 남겨둔다는 점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그들에 대해 말살 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대로 대우했던 것이다. 하지만 눈으로 드러나는 특권의 이면에는 다대한 압박과 감시가 존재했다. 유례없는 특권의 부여는 그만큼 이들에 대한 감시 작업 또한 강하게 펼쳐야 함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일제가 이처럼 조선 왕실을 명시적으로 우대하면서도 그 이면에서 어떻게 약체화시켜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중국으로 가서는 조선 왕실이 조선 민중들에게 미쳤던 심적 지배력을 해체시켜 나가는 과정에 대한 고찰이기도 하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중요한 소재로 잡은 것이 바로 조선 왕실의 구성원으로서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갔던 ‘在日 왕공족’이다. 英親王 李垠과 李鍵, 李鐸, 그리고 德惠翁主 등 조선 왕실의 후예들은 모두 10대의 어린 나이에

유학을 명목으로 일본행에 오른다. 이들은 머지않아 고종과 순종의 사후 조선 왕실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상징화될 인물들이었다.

고·순종이 조선 민중들에게 미치는 심적 지배력이란 이미 대단히 공고하여 일제가 이 유대감을 깨뜨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는 고종과 순종의 승하가 도화선이 되어 발생했던 3·1운동과 6·10만세운동 등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운동의 목표가 대한제국으로의 복귀 등을 의미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의 國喪을 매개로 독립을 향한 의지가 집결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¹⁾ 때문에 일제는 이들은 차치하고라도, 그 다음代 왕실의 후계자들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관리를 통해 그들이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상징성을 완전히 해체시켜야만 했다. 요컨대,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영구히 하고자 하는 일제의 장기적 계획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관리 정책은 대단히 중요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조선 왕실의 후예인 '재일 왕공족'을 중심으로 일제의 對왕공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시간의 추이대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제1장에서는 조선 왕실의 주요 구성원들이 도일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당시 일제가 어떠한 논리를 통해서 그들의 일본행을 성사시켰으며, 실제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집중적으로 밝히는 작업이다. 특히 이를 통해 일제시기 대왕공가 정책에 있어서 도일 정책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간취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제2장에서는 일제의 왕공족 도일정책에 따라 일본에 상주하게 된 재일 왕공족의 일본 생활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선 왕실의 후계자들을 일본에 상주시킨 일제는 이제 이들을 일본 체제 내로 어떻게 흡수시킬 것인가라는

1) 여기에 대해서는 장석홍, 「융희황제 국상에 대한 국내외 민족언론의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9, 1995를 참고하기 바란다.

난제에 봉착하게 된다. 재일 왕공족이 천황이 다스리는 제국의 충실한 구성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왕공족의 신분적 명확성이 전제되어야만 했다. 이리하여 만들어지게 된 것이 「왕공가계법」이다. 여기에서는 계법의 공포로 왕공족의 법적지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계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그 시대적 배경에 관하여 아울러 살펴볼 것이다. 또한 왕공족의 지위 확정과 더불어 재일 왕공족을 대상으로 추진된 정략결혼 정책을 통해 일제가 최종적으로 지향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지위확정과 정략결혼을 통해 일본 체제 내로 흡수된 왕공족이 어떠한 조직 속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는지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앞으로 본문에서 언급하게 될 일제의 대왕공가 정책은 근대시기 일본 제국 내에 편입되었던 홋카이도, 오키나와, 대만 등과 비교해보았을 때 독특하게 구분되는 조선만의 특징이었다. 즉, 이 정책은 일본이 제국 내에 편입시켰던 여타의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조선에 대한 식민정책을 특징화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주는 셈이다. 이처럼 일제시기 조선 식민통치라는 역사상 속에서 그 새로운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조선 왕실, 특히나 ‘재일 왕공족’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사료된다.

2. 연구현황

최근 한국에서는 왕실 문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됨에 따라 일제시기 조선 왕실에 대한 입문서와 번역서의 출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²⁾ 하지만

2) 정범준, 『제국의 후예』, 황소자리, 2006; 곤도시로스케著, 이언숙譯, 『대한제국황실비사』, 이마고, 2007; 혼마야스코著, 이훈譯, 『덕혜옹주』, 역사공간, 2008.

1980년대 말까지 학계에서 일제시기 조선 왕실에 관한 연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해방 이후 ‘나라를 망하게 한 무능력한 왕조’라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저변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동진이 여기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를 시작한다. 그는 저서에서 『齋藤實文書』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20년대 일제의 李王家 약체화 정책을 정치하게 기술해놓고 있다.³⁾

일제시기 조선 왕실에 관해서는 199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주로 미술사학과와 음악사학과에서 많은 연구 논저들이 발표되었다. 미술사학과에서는 주로 이왕직박물관⁴⁾과 이왕직미술품제작소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음악사학과에서는 이왕직 雅樂部를 소재로 한 연구들이 연이어 발표되었다.⁶⁾

이에 반해 역사학과에서는 그 시도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왕실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급증함과 동시에 많은 연구 논저들이

3)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4) 목수현, 「일제하 이왕가 박물관(李王家博物館)의 식민지적 성격」, 『미술사학연구』227, 한국미술사학회, 2000; 이미나, 「이왕가 미술관의 일본미술품 전시에 대하여」, 『미학예술학연구』11, 2000; 박계리, 「타자로서의 이왕가 박물관과 전통관-서화관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240, 한국미술사학회, 2003; 박소현, 「제국의 취미-이왕가 박물관과 일본의 박물관 정책에 대해」, 『미술사논단』18, 한국미술연구소, 2004.

5) 최공호, 「李王職美術品製作所 研究」, 『고문화』34,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89 및 「韓國 近代 工藝의 二元構造, 그 형성과 전개」, 『美術史學』8, 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 1994 및 『한국 현대 공예사의 이해』, 재원, 1996.

6) 송혜진, 「이왕직아악부의 이습회 운영과 20세기 궁중음악의 전승」, 『역대 국립음악기관 연구-신라 음성서에서 국립국악원 개원까지』, 국립국악원, 2001; 김명주,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의 방송활동-경성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30, 한국음악사학회, 2003; 남상숙, 「宗廟祭禮樂譜 考察」, 『한국음악사학보』31, 한국음악사학회, 2003; 성기련,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의 음악교육 연구」, 『동양음악』26,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4; 이정희, 「이왕직아악부의 활동과 안팎의 시각」, 『동양음악』26,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4; 정재국, 「1930년대 이후 정악의 변화양상 고찰」, 『한국음악사학보』33, 한국음악사학회, 2004; 진지영, 「현행 정악의 개념과 그 형성배경에 대한 재조명」, 『음악과 문화』10, 세계음악학회, 2004; 정수진, 「조선음악, 조선음악가의 困難」, 『한국민속학』41, 한국민속학회, 2005.

나오고 있다. 역사학계에서 조선 왕실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하나는 일제시기 왕공족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들을 관리하는 기구인 이왕직에 대한 연구이다.

먼저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金英達의 논문과 신조 미치히코의 논문이 눈에 띈다. 김영달은 그의 논고에서 왕공족은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일제시기 왕공족이 일본황족, 일본민중, 조선민중 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⁷⁾ 그는 한국 황실이 일제로부터 왕공족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 받았지만 이는 불확실한 지위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병합당시 천황의 조서에 왕공족에 대해서는 황족의 예우로 대우하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내용으로 인해 왕공족을 황족으로 간주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졌는데, 그 좋은 예가 영친왕 이은과 일본 황족이었던 梨本宮方子の 결혼 문제이다. 그는 바로 이러한 불확실한 왕공족의 지위가 1926년 「왕공가궤법」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았다.⁸⁾

신조 미치히코는 앞서 김영달이 언급했던 왕공족 지위의 불확실성을 좀더 세밀히 분석하였다.⁹⁾ 그는 일본의 식민통치를 명목과 실제정책의 괴리라고 보고, 당시 왕공족이 가지는 불확실한 성격도 이러한 틀 내에서 바라보고 있다. 즉, 조선을 내지와 동등한 ‘일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실제 정책상 내지와 조선을 구별했던 조선통치의 특징이 왕공족이 가졌던 불확실

7) 金英達, 「朝鮮王公族の法的地位について」, 『靑丘學術論集』14,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1999.

8) 여기에서 필자가 언급해두고자 하는 것은 「왕공가궤법」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나오게 되었느냐는 점이다. 김영달은 그의 논저에서 「왕공가궤법」이 가지는 결과론적 의미만을 서술해놓고 있다. 여기에 대한 보론으로 필자는 그러한 「왕공가궤법」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 및 경위 등을 본고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고 제2장 제1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9) 신조 미치히코, 「이은(영친왕)-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문제와 왕족의 양면성: 정략결혼은 왜 필요했을까?」, 『역사비평』75, 2006.

성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일제는 병합의 조서에서 왕공족을 황족의 예우로 대우한다고 하면서 명목적으로는 우대 및 포섭정책을 펼치지만, 실제로는 일본 황족과 왕공족을 구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이왕직에 관한 연구는 신명호의 논문을 선구로 하여¹⁰⁾ 현재 다수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¹¹⁾ 이왕직은 일제시기 왕공가로 격하된 조선 왕실의 家務를 담당하던 기관이었다. 이 논문들은 주로 병합 이후 조선 왕실이 왕공족이라는 신분을 부여받게 되는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는 한편, 『조선총독부관보』와 『순종실록』부록 등을 이용하여 이왕직의 생성과 그 직제의 변화과정을 대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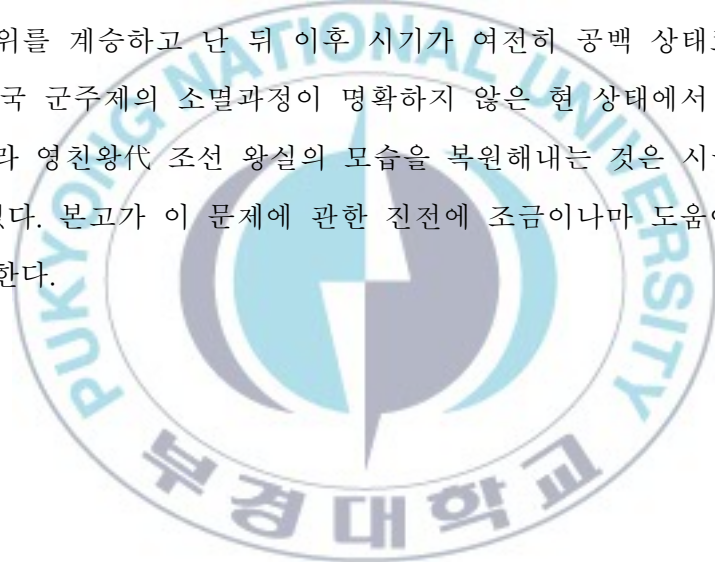
이밖에도 영친왕과 이본궁방자의 정략결혼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¹²⁾ 특히 송우혜는 그의 논고에서 일제가 언론을 이용하여 본 정략결혼을 성사시켜 나가는 과정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일제시기 조선 왕실의 상징물인 궁궐의 훼손 과정에 대해서 분석한 논고도 연이어 발표되었다.¹³⁾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일제의 대왕공가 정책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나갔는지에 대한 분석이 미미한 점은

-
- 10) 신명호, 「일제하 李王職과 李王家 족보」, 『한국학대학원 논문집』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96 및 「일제하 高宗純宗實錄·高宗純宗國朝寶鑑의 편찬과 장서각 자료:實錄編纂參考書目錄과 國朝寶鑑編纂關係書類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79, 2000
 - 11) 이지선, 야마모토 하나코, 「직원록(職員錄)을 통해서 본 이왕직(李王職)의 직제(職制) 연구」, 『동양음악』26,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4; 이승우, 「일제하 일본의 조선 왕실에 대한 인식과 李王職의 운영」,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윤상, 「일제하 ‘조선왕실’의 지위와 이왕직의 기능」, 『한국문화』4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 12) 崔長根, 「日本の 韓國皇室 抹殺과 同化政策」, 『朝鮮史研究』8, 朝鮮史研究會, 1999; 송우혜, 「이은의 정략결혼 연구-언론보도(1907~1920)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13) 이성시, 「조선왕조의 상징 공간과 박물관」,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2004; 홍순민, 「日帝의 植民 침탈과 景福宮 훼손」, 『문명연지』5권1호, 한국문화학회, 2004.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예를 들면, 이왕직 조직 자체의 변화에 대한 명시적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 무엇이며 당시 일제의 대왕공가 정책과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현재 일제시기 조선 왕실에 관한 연구는 고·순종代에 집중되어 있다. 본론에서 언급하게 될 일제의 왕공족 도일 정책에 따라 조선 왕실의 주요 구성원들이 강제로 일본 동경에 상주하고 난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논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즉, 1926년 순종의 죽음으로 영친왕 이은이 李王의 지위를 계승하고 난 뒤 이후 시기가 여전히 공백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한국 군주제의 소멸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 고·순종代 뿐만 아니라 영친왕代 조선 왕실의 모습을 복원해내는 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고가 이 문제에 관한 진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왕공족 渡日정책의 배경과 과정

1. 왕공족 도일정책의 시작-영친왕의 일본유학

일제의 대한침략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대한제국황실 약화정책이었다. 모든 권력이 집중된 황실을 장악하여 이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종국으로 가서는 일반국정에서 완전히 분리해야만 그들의 침략정책을 보다 원활하게 전개해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초대 통감 伊藤博文이 “한국시정개선을 위한 협의회”에서 끊임없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고종을 압박했던 것도 바로 宮中과 府中을 단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다. 1906년 7월 7일 ‘무질서하고 빈번한 잡배의 출입을 단속한다’는 구실 아래 왕궁의 외문을 일제고문경찰로 하여금 단속하게 한 宮中 禁足令의 공포도 고종을 정치적으로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¹⁴⁾ 또한 황실재정정리 작업을 통해 황실재정과 국가재정을 분리시키는 한편 황실재산을 대거 국유로 편입시킴으로써 황실 경제력의 약화를 도모했다.¹⁵⁾

이러한 일제의 대한제국황실 약화정책은 마침내 헤이그밀사사건을 벌미

14) 『통감부문서』1, 국사편찬위원회, 1998, pp.189~198.

15)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재호, 「保護國期(1904~1910)의 皇室財政 整理」, 『경제사학』16, 한국경제사학회, 1992; 이상찬, 「일제침략과 황실재정정리(1)」, 『규장각』15,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2; 양상현, 「大韓帝國 內藏院 財政管理 研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이영호, 「통감부시기 조세증가정책의 실현과정과 그 성격」, 『한국문화』18,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6; 이운상, 「통감부 시기 일제의 한국 재정 침탈」, 『숙명한국사론』2,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사학과, 1996; 김혜정, 「일제의 고문정치와 한국재정 침탈」,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로 대한제국 황제인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고, 이후 일제의 대한침략정책은 식민지화를 향해 더욱 급속도로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일제의 황실약화정책의 범위가 비단 형식적으로나마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고종과 순종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후일 한국 황실을 이끌게 될 황족들에 대한 통제정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영친왕 이은의 일본유학은 바로 이러한 잠재적인 황족 즉, 일제시 기 조선 왕실을 대표하게 될 왕공족에 대한 통제정책의 첫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영친왕은 1907년 7월 12일 순종이 황제에 오른 이후, 8월 7일에 황태자로 책봉된다. 그리고 책봉 후 약 4개월만인 12월 5일에 太子太師 이등박문과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시기적으로 보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일제는 영친왕의 일본행과 관련하여 신중하고 치밀한 사전작업을 벌이고 있었다.¹⁶⁾ 특히 이등은 영친왕의 일본유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침략적 의도를 숨기고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을 무마시켜 일본유학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함이었다. 유학을 실행시키기에 앞서 일본 황태자 嘉仁親王(후의 大正천황)의 한국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었다.

이등은 明治천황에게 영친왕의 일본유학계획을 보고하고 허락을 받은 뒤 곧이어 1907년 9월 16일에 영친왕을 일본에 맞아들임에 앞서 한국 통치의 실황을 보여준다는 취지 아래 嘉仁親王의 한국방문을 주청한다.¹⁷⁾ 이에 천황은 당시 한국의 치안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이등의 강력한 의지로 결국 성사되기에 이르렀다.¹⁸⁾ 그리하여 일본 황태자는 동년

16) 김명길은 그의 저서에서 유학을 떠나기 전 덕수궁에 거처하던 영친왕을 창덕궁 낙선재로 移居시킨 것도 ‘불모계획’의 사전준비로 고종과 엄비로부터 정을 떼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김명길, 『낙선재주변』, 중앙일보·동양방송, 1977, p.18).

17) 이왕은전기간행회編著, 백남철譯註, 『영친왕이은전』, 우성문화사, 1980, p.72.

18) 실제로 일본 황태자가 방문할 당시 대한제국에는 虎列刺의 발생으로 인하여 치안이 불

10월 16일에 인천항을 통해 들어와서 4일간 한국에 체류하게 된다. 이등이 일본 황태자의 한국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목적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당시 일본 황태자의 귀환 후 발표된 순종의 조령에서 그 일단을 확인해볼 수 있다.

조령을 내리기를,

“이번에 일본국 황태자가 한국에 건너온 것은 바로 우리 한국 역사에 있지 않은 성대한 일이다. 여러 해 동안 의심하고 막혔던 두 나라의 관계와 사람들의 많은 감정이 일시에 얼음이 풀리듯이 풀리고 성심으로 맞이하면서 환영하는 소리가 우리와 같으니, 민심이 크게 하나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제부터 두 황실 간의 화목한 우의는 聘問과 盟約을 하지 않고도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두 나라 사람들의 친밀한 정분은 원고하지 않아도 더욱더 굳어질 것이다. 짐은 일본 황실의 훌륭한 뜻에 깊이 감동되어 앞으로 마음을 기울여 단합하여 민생의 행복을 증진시키며 나라의 운명을 공고하게 하려고 한다. 너희들 대소 신민들은 짐의 말이 속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잘 알고 다른 생각 없이 깊이 믿고 영원불변하기를 꾀하라.”하였다.¹⁹⁾

이 조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황태자의 한국방문이 한일 양국 간의 불신과 갈등이 해결되는 도화선이 될 것이며, 일본과 우의를 다지려는 순종의 뜻을 일반 민중들 또한 그대로 따를 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으로는 순종이 내린 조령이기는 하지만, 당시 반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었던 한국의 실정을 생각해보았을 때 통감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발표된 것이었다.

고종의 강제 퇴위 이후 1907년 7월 24일 체결된 한일신협약은 법령의 제

안정한 상태였다(『통감부문서』4, 국사편찬위원회, 1999, (128)韓國現地の 虎列刺防疫現況 및 日皇太子迎接 件).

19) 『순종실록』권1, 융희1년 11월 2일.

정, 행정 처분, 고등관리의 임면 등에 있어서 통감의 사전승인이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었다.²⁰⁾ 특히 이 협약을 통해서 일본인은 정식 한국관리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이등 통감에 의해 한국정부의 내정이 완전히 장악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통감부의 노골적인 침략 행위는 한국 민중들의 분노를 일으키기 충분했다. 고종의 양위 조서가 발표된 1907년 7월 18일 밤 자강회, 동우회, 기독교청년회 등의 회원들이 중심이 된 2천여 명이 서울 종로거리에서 대규모 시위운동을 전개해 나갔다.²¹⁾ 게다가 1907년 8월 1일에는 한국군대까지 강제해산 당하게 되자 한국 민중들의 반일 감정은 극도에 이르러 이후 대규모 무장의병투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반일 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제는 일본 황태자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화합을 크게 선전하면서 한국 민중들의 반일 감정을 해소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조만간에 성사될 영친왕의 일본 유학행에 대해서도 비판여론을 무마시켜 이를 순조롭게 실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07년 11월 19일 영친왕의 일본유학이 발표됨과 동시에, 이등박문을 태자태사로 삼는다는 내용의 詔슈이 내려지게 된다.²²⁾ 이 조령에서 이등박문은 태자태사에 임명되어 영친왕의 유학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게 됨과 동시에 親王의 예로써 대우받아 모든 관리의 윗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그런데 이 태자태사로의 임명 또한 실질적으로 영친왕의 일본유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다음은 1907년 11월 11일 이등 통감이 西園寺 公望 일본총리대신에게 보냈던 電文이다.

제11호 (極秘) 한국황제의 內意를 전해 들었는데, 本官에게 위임하기를 황태

20) 국회입법조사국, 『舊韓末 條約彙纂』上,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4, pp.87~89.

21) 강동진, 『한국을 장악하라』-통감부의 조선침략사, 아세아문화사, 1995, pp.234~235.

22) 『순종실록』권1, 융희1년 11월 19일.

자의 太師로 하고, 대우하기를 親王의 예로써 한다고 한다. 師傅의 직은 보통의 관직과 달라 오로지 교육지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도 무방하다. 특히 한국 上下의 人心을 붙잡아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략상에 있어서도 이바지됨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례적인 일에 속하기 때문에 미리 聖裁를 받들고자 한다. 각하를 번거롭게 하노니 아무쪼록 貴答을 바란다.²³⁾

이 전문에서 보이듯이, 이등 통감은 친왕의 예로써 대우한다는 것이 일본 황실의 친왕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황태자에 관한 교육에 있어서 師弟의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의 선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도 무방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전통에 근거한 태자태사로의 임명이 황태자의 일본유학행에 대한 일반 민중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등은 황태자와 정식으로 사제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후에 조선왕실을 이끌어 갈 영친왕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둘 수 있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등은 황태자의 일본유학과 관련하여 황실 및 정부 그리고 일반 민중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영친왕의 도일 후 한국 황실 내 상궁들의 東京 방문을 추진하기도 한다.²⁴⁾ 궁중 내에서 커다란 위상을 가지는 상궁들에게 일본 황실의 영친왕에 대한 특별한 우대를 직접 보여주고 이를 한국 황실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고종을 안심시키고 한국 내의 부정적 여론을 타개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에 거주하게 된 영친왕은 이제 일제의 엄격한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영친왕 도일 직후 일본 궁내성에서는 ‘韓國皇

23) 『통감부문서』3, 국사편찬위원회, 1998, p.493.

24) 곤도시로스케著, 이언숙譯, 『대한제국황실비사』, 이마고, 2007, p.65.

太子殿下附’라고 하여 영친왕에 부속된 별도의 직원을 따로 뽑아 운영한다. 그 초기의 직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職名	官名	이름
御教養掛	宮內省御用掛	末松謙澄
御用掛	侍從職幹事	岩倉具定
	侍醫頭	岡 玄卿
	宮內書記官	栗原廣太
	侍醫寮御用掛	岩井禎三
御用掛附屬		大谷木長通 八木岡貞義 林 健太郎 金阪正道 山內豐寧 橋 茂實

<표1> 韓國皇太子殿下附 직원 현황(1908년 5월 1일 현재)²⁵⁾

그리고 1909년 7월에는 영친왕에 대하여 일본 궁내성에서 특별교육기관을 신설하고, 천황은 그 保育總裁에 이등을 임명했다.²⁶⁾ 타국의 황태자에 대하여 일본 궁내성에서 자국 『직원록』에까지 정식으로 편재되는 기관을 두고 관리·감독 하에 두었다는 점은 당시 일제의 한국침략에 대한 철저한 계획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라고 말할 수 있다. 이후 이 ‘韓國皇太子殿下附’는 한일합병이 이루어질 때까지 존속하였고, 일본 내 영친왕의 전반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주요한 기능을 담당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일제가 이토록 치밀하게 영친왕의 일본유학을 계획하고 실행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먼저 유학이 가지는 불모적 성격을 통해 그들

25) 『職員錄』明治四十一年 甲, p.45.

26) 『순종실록』권3, 융희3년 7월 27일.

의 의도를 파악해낼 수 있다. 당시 일제는 고종의 강제 퇴위 이후에도 그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었다. 이는 1907년 이등 통감이 외무차관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지금 경성의 형세를 보건대, 원래 先帝는 閣臣의 권고에 따라 그 본심이 아닌 양위를 한 자이다. 때문에 그 이래로 여러 가지 음모수단으로써 군주권을 회복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듯하다.’²⁷⁾고 말하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다. 또한 1909년 12월 고종이 前내부협관 沈相翊을 매개로 외국인에게 50만원을 차관하여 한국독립운동을 위해 미국과 프랑스에 밀사를 파견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²⁸⁾ 이처럼 고종은 강제로 퇴위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권력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친왕의 일본 유학은 바로 이러한 고종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영친왕은 고종의 말년에 엄비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로, 형인 의친왕을 제치고 황태자에 책봉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었다. 일제는 이러한 영친왕을 일본으로 끌고 감으로써 고종의 반일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한국을 식민지화한 이후 조선 왕실을 철저히 고립화시키고 有名無實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종과 순종의 사후 조선 왕실을 이끌게 될 영친왕을 애초부터 한국 민중들과 철저히 유리시킴으로써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분규, 예컨대 독립운동세력들과의 연계 등을 사전에 막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일제시기 公家의 대표자였던 의친왕 이강의 국외탈출사건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이다. 때문에 일제는 이미 대한황실의 상징으로 일반 민중들과 강력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고종과 순종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후일 조선

27) 『통감부문서』4, 국사편찬위원회, 1999, pp.143~145.

28) 『통감부문서』6, 국사편찬위원회, 1999, (831)韓國皇帝의 獨立運動을 위한 外債募金次 美佛에의 密使派遣計劃 件

왕실의 계승자가 될 영친왕은 일본 내에서 자신들의 철저한 감독 하에 놓아둠으로써 조선 식민정책에 방해가 될 위험요소를 예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제의 의도는 뒷장에서도 후술하겠지만, 순종의 사후 李王을 계승한 영친왕을 국내에 거주시키지 않고 동경에 계속 거주시키면서 관리·감독하는 모습에서도 잘 간취해낼 수 있다. 당시 京城駐劄露國總領事였던 소모프에 관한 일본관헌의 조사내용에서도 영친왕의 일본유학행은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警秘第三三三二號의 —29)

京城駐劄露國 소모프 총영사는 요즈음 일본의 대한정책에 관하여 러시아말로 韓人 아무개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누설했다고 하는 풍설이 있다.

(중략)

一. 일본의 대한정책 수행상 현 황제 1대로 한하고, 마침내 황위를 단절시키기에 이를 것이다.

一. 일본이 한국 황태자를 本國에 유학시킨 것은 성의를 다하여 면학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영구히 일본에 억류하여 현 황제 붕어 후에는 황위계승을 단절시킬 것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점차 한국정부의 조직을 변경하고 각 부를 폐지하며, 러시아가 지난날 극동에서 總督制를 채용했던 것과 같이 일본은 한국에 총독부를 설치하게 될 것이다.

(중략)

이상은 믿음을 두기에는 족하지 않는 풍설에 가깝지만,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통보해드립니다.

융희3년 10월 21일

경시총감 若林賚藏 印

외무부장 鍋島桂次郎 殿

29) 『통감부문서』9, 국사편찬위원회, 1999, pp.179~180.

세 번째는 일제의 대한침략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일제의 식민정책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문명개화’이다. 일본의 식민지배는 한국의 현실을 왜곡하고 사회 전반에서 일본이 우월하고 한국은 낙후되어 있으며 식민지배가 한국인의 행복을 보장해준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³⁰⁾ 그리고 이러한 ‘문명개화’의 논리는 한국 황실에도 여지없이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일제는 그들이 잡배라고 규정한 무당 및 점쟁이 등이 출입하는 한국 황실의 비문명성을 신랄히 비판하면서 이들의 무분별한 출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궁중금족령을 공포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책은 구국방책을 보고하기 위해 상경한 유생들과 반일경향을 가진 궁중세력 등으로부터 고종을 고립화시켜 황권을 약화시키려는 교묘한 술책이었던 것이다.

영친왕의 일본유학은 바로 이러한 일제의 이중적인 식민 이데올로기를 더욱더 공고히 뒷받침해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다.

신민들에게 칙유하기를,

“황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짐은 생각하건대 나라는 대를 이을 사람으로 근본을 삼고, 대를 이을 사람을 육성하는 데는 일찍 가르치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나 교육에는 옛날과 지금의 차이가 있다. 세계가 서로 통하는 이때에 지식을 개발하고 문무를 다 통달하려면 다만 太子侍講院과 書筵에서 한두 명이 강의하는 것으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먼 곳에 유람하면서 널리 배워야만 재능과 덕성을 성취하여 정치의 방도를 밝게 연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양 여러 나라의 태자들도 대부분 어린 시기에 외국에 유람하였으며, 심지어는 벼슬하여 군대에 들어 간 사람도 있었다. 우리 황태자는 영특하고 슬기로움이 일찍이 이루어져서 실로 태자다운 덕이 있으므로 일찌감치 유학을

30) 김도형, 「한말 친일파의 등장과 문명개화론」, 『역사비평』25, 역사비평사, 1993, p.127.

보내야 하고 깊숙한 태자궁에만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태자태사인 統監 公爵 伊藤博文으로 하여금 일본에 데리고 가서 도와주고 깨우쳐주게 하며, 교육하는 방도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大日本 大皇帝에게 의뢰하여 꼭 성취시키도록 하려고 한다. 이것은 물론 우리 한국에서 처음 있는 성대한 조치인 동시에 우리 한국이 끝없이 경사롭게 될 시초이다. 이 다음에 우리나라가 부쩍 일어나고 우리나라 운수가 새로워지며 우리 황실의 운수가 열릴 가망이 오늘의 이 조치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짐의 생각에는 의심이 없으니 너희들 신민들은 이런 뜻을 모두 알고 있으라.”하였다.³¹⁾

위는 1907년 11월 19일 이등박문을 태자태사로 임명한 사실을 순종이 일반 민중들에게 칙유한 내용이다. 일제는 이 칙유를 통하여 영친왕이 국내에서 벗어나 유학을 떠나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자신들의 도움 하에 신학문을 접한 황태자로 인하여 한국 황실이 더욱더 번영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즉, 일제는 ‘문명개화’라는 논리를 통해서 영친왕의 일본유학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그들이 전해준 문명의 시혜가 밝은 한국의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일제는 바로 영친왕을 구시대적인 잔재 속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문명개화’의 표상으로 이미지화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제의 의도는 영친왕의 일본유학행 이후 실행했던 여러 조치들에서도 잘 드러난다. 일제는 일본 황실의 극진한 대우와 세심한 배려 속에서 신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영친왕의 모습을 크게 선전함으로써 그들에게 향한 민중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고자 했던 것이다. 일본관광단원들의 연설계획도 그 중의 하나였다.

31) 『순종실록』권1, 융희1년 11월 19일.

憲機第一〇五七號³²⁾

한국정부에서는 지난날 觀光團員 중 몇 명으로 하여금 지방순행연설을 시키는 것으로 內議를 하나로 정했다고 하는 설이 있다. 그리고 그 요지는 일본에서의 한국 황태자 전하의 근황부터 일본 황실의 전하에 대한 대우 및 일본이 한국에 대해 성심성의로 지도하고 있는 일은 추호도 의혹할 만 한 점이 없으므로 금일까지의 오해를 풀고 일본의 성의를 이해시키기 위한 책략이라고 한다.

명치42년 5월 22일

실제로 이러한 결정 이후 1909년 10월에 일본관광단원이었던 李源升과 李大榮 및 趙寧奎는 각각 전라북도와 경기도, 황해도 등지에서 연설을 시작한다. 그들은 영친왕에 대한 일본 황실의 특별한 대우와 일본의 부강함 등을 설명하면서 일본의 보호 아래에 의탁해야 할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 중 황해도 민중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高秘收第五三三七號의 —33)

황해도 연설 중인 조영규는 본월 14일부터 19일에 걸쳐 長淵, 松禾, 殷栗, 長連, 安岳, 信川 등 여섯 개 郡邑에서 연설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연설 중에 유학 중인 황태자 전하에 대한 일본 황실의 우대 및 伊藤 태사의 성실한 輔導를 말하자 각지에서 모두 대단히 감동하였고 그 중에서도 신천과 같은 곳은 수 회의 박수로 이를 환영하였다. 그렇지만 일본 문명의 발달, 식산공업의 진보, 한국민은 일본의 보호에 따라 그 생전을 도모해야 할 것, 일한 양국의 국교를 방해하는 대한매일신보 구독을 폐지하자는 연설은 심하게 차가운 눈초리로 청취했다고 한다. 來聽者는 안악의 8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300명에 달하였다. 특히 각지에서 모두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의

32) 『통감부문서』10, 국사편찬위원회, 2000, pp.334~335.

33) 『통감부문서』10, 국사편찬위원회, 2000, pp.368~369.

부녀가 방청한 사실은 주의할 만 한 현상으로, 곧 시대추이의 징후일 것이라고 한다.

물론 황해도도 한 사례로 당시 한국 민중들의 여론을 파악해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영친왕이 일본에서 풍요로운 유학생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황해도 민중들의 모습은 일제가 계획했던 영친왕의 일본유학행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친왕의 일본유학생생활은 겉으로는 이처럼 긍정적으로 선전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했다. 영친왕은 철저히 통제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거의 모든 하루 일과가 鳥居坂 어용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³⁴⁾, 특히 어용저 안으로 여자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어 있었다.³⁵⁾ 한국에서는 아침저녁으로 모든 일상을 상궁의 손을 통해 받아왔지만, 일본에서는 그러한 생활이 결코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상궁들의 동경방문 당시 이등 통감이 옆에 있을 때에는 미소조차 띠지 못하고 엄격한 태도로만 일관하던 영친왕이 그가 밖으로 나간 이후에야 상궁들과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는 千上궁의 증언은 영친왕의 동경생활이 얼마나 엄격한 통제 아래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일례이다.³⁶⁾

또한 영친왕의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한국 궁내부가 아닌 일본 궁내성에 일임되어 있었다. 1910년 4월 8일 천황의 분부에 따르면, 한국 황태자御用掛인 伊藤博邦으로 하여금 영친왕의 교육에 관여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감독케 하고, 그 중요 사항 및 학과 개정 등은 시종장 德大寺實則에게 신고하여 궁내대신 渡邊千秋와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³⁷⁾

34) 『朝鮮貴族列傳』, 조선총독부인쇄국, 1910, pp.23~24.

35) 이왕은전기간행회編著, 백남철譯註, 『영친왕이은전』, 우성문화사, 1980, p.89.

36) 『통감부문서』6, 국사편찬위원회, 1999, (196)渡日女官ノ談片

이러한 영친왕의 통제된 생활은 유학 후 귀국 횟수를 살펴보면 더욱 여실히 파악할 수 있다. 일제는 영친왕의 학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명목 하에 그의 귀국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다.³⁸⁾ 1919년 부왕인 고종이 승하할 때까지 영친왕의 귀국 횟수는 단 3차례에 불과했다. 즉, 1907년 12월 유학을 명목으로 일본으로 끌려간 이후 약 10년 간 3차례의 조선 방문만이 허락되었던 것이다. 1912년 모친인 엄비가 사망했을 때³⁹⁾, 1918년 성인이 됨과 동시에 육군소위로 임관했을 때⁴⁰⁾, 1919년 부왕인 고종이 승하했을 때에만 비로소 귀국할 수 있었다. 이는 일제시기 왕공족 도일정책에 따라 1922년 7월 5일 일본행에 오르는 이우가 약 20여일 만에 조선으로 귀환하는 것과 비교해보아도 대단히 엄격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⁴¹⁾ 이처럼 영친왕은 일면 ‘일본 황태자에 준하는 대우’를 통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일제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고 있었던 것이다.

2. 고·순종의 죽음과 왕공족 도일정책의 가속화

영친왕이 일본으로 유학간지 약 3년 만에 한일합병이 강제적으로 단행되면서 대한제국은 ‘朝鮮’으로 격하되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국 황실도 ‘王公家’로 폄하되어 형식적으로 일본 황실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아래는 1910년 8월 29일 ‘한국을 제국에 병합하는 건’과 함께

37) 이왕은전기간행회, 『앞의 책』, p.111.

38) 곤도시로스케, 『앞의 책』, p.136.

39) 이왕은전기간행회, 『앞의 책』, p.133.

40) 이왕은전기간행회, 『앞의 책』, pp.202~208.

41) 『동아일보』, 1922년 7월 22일자.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처음 반포되었던 천황의 조서로, 前 한국 황실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다.

○ 전 한국황제를 책봉하여 왕으로 하는 건(1910년 8월 29일)⁴²⁾

짐이 영원무궁한 큰 토대를 넓게 하고 국가의 비상한 예의를 마련하고자 하여 전 한국 황제를 책봉하여 王으로 삼고 昌德宮李王으로 칭하니 사후 이 융성한 하사를 세습하여 그 종사를 받들게 하며, 황태자와 장래 세습할 자를 王世子로 삼고, 태황제를 太王으로 삼아 德壽宮李太王으로 칭하고, 각각 그 배필을 왕비, 태왕비, 왕세자비로 삼아 모두 황족의 예로써 대우하며 특히 전하의 경칭을 사용하게 하니, 대대로 따르는 도리에 있어서는 짐이 마땅히 법도와 의례를 따로 정하여 李家의 자손으로 하여금 대대손손 이에 의지하고 복록을 더욱 편안히 하여 영구히 행복을 누리게 할지라. 이에 백성에게 널리 알려서 특별한 법을 밝히노라.

○ 이강과 이희를 공으로 하는 건(1910년 8월 29일)⁴³⁾

짐이 생각건대, 李垞과 李熙는 이왕의 懿親으로 명성이 일찍부터 두드러졌고 온 나라에서 우러러 보고 있으니 마땅히 특별한 대우를 더 내려서 그 儀稱을 풍요롭게 할지라. 이에 특히 公으로 삼고 그 배필을 공비로 삼아 모두 황족의 예로써 대우하고 전하란 경칭을 쓰게 하여 자손으로 하여금 이 영광의 하사를 세습하여 영구히 아끼는 영광을 누리게 하노라.

일본 천황은 합병과 동시에 前 한국황제인 순종을 ‘昌德宮李王’에, 황태자였던 영친왕을 ‘王世子’에, 태황제였던 고종을 ‘德壽宮李太王’에 각각 봉하고, 이들에게 황족의 예우로 대우할 것을 조서로 발표하였다. 또한 대한제국시기 親王에 책봉되었던 이강과 이희는 公에 봉하며 동일하게 황족으로

42) 『조선총독부관보』1호, 1910. 8. 29일자.

43) 『조선총독부관보』1호, 1910. 8. 29일자.

예우할 것을 공포하고 있다. 뒤이어 같은 날 『官報』에서는 ‘王族 및 公族의 칭호’라는 제목으로 각각의 칭호를 일반 민중들에게 알림으로써, 왕족과 공족이라는 지위를 보다 확실히 명문화하였다. 합병 당초 이러한 여러 조치들을 통해 한국 황실은 일본 황실 아래의 하부단위인 ‘王公家’, ‘王公族’이라는 이름으로 일제시대 동안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전 국가권력의 최고위층이었던 한국 황실에 왕공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며 조선 식민지화를 시작한 일제는 합병 이후에도 이들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해나간다. 앞서 주지하였다시피, 왕공족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조선 민중들에게 독립의 가능성을 품게 해주는 매개체였다. 이에 반해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 작업을 원활히 수행해야 할 일제의 입장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지배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장애물이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합병 당초부터 왕공족이 반체제적인 독립 세력 등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도 연계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작업을 중요 식민정책의 하나로 수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의 對왕공가 정책은 크게 우대 정책과 고립화 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즉 명목적으로는 왕공족에 대해 황족에 버금가는 특권을 부여하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철저한 감시 하에 이들에 대한 통제 정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일제시기 왕공족에 대한 관리기관인 李王職의 사무관이었던 權藤四郎介가 “일본제국 정부와 궁내성, 특히 寺內 총독이 이왕가에 취한 고도의 정책을 살펴보면, 이왕가를 정치실권 밖에 둘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안팎의 사교계와 멀어지게 하는 한편, 왕족가문으로서 그 존귀함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표하는 것이었다.”⁴⁴⁾라고 자평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그 일단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식민통치에 있어서 일제가 보여주었던 이중성이 대왕공가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44) 權藤四郎介, 『李王宮秘史』, 朝鮮新聞社, 1926, p.45.

특히 초대 조선총독이었던 寺内正毅는 왕공족에 대하여 극도의 통제 정책을 펼쳤다. 일제시대 동안 왕공족의 家務를 담당하는 기관은 이왕직이었고, 이 기관은 황실령 제34호에 따라 궁내대신의 관할에 속하였다. 하지만 뒤이어 공포된 제39호는 조선 내 이왕직의 사무 및 조선에 근무하는 이왕직 직원은 조선 총독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⁵⁾ 즉, 법령상으로 왕공족 및 이왕직에 관한 실질적 감독권은 조선 총독에게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寺内는 왕공족에 대한 예산을 비롯하여 제반 규정의 개정·폐지 및 인사이동까지 직접 관장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특히 그는 정치상의 문제는 그것이 儀式이라고 할지라도 일체 간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는 궁내성에서 제국의회 개원식 때 공족인 李掞을 참석시킨 일에 관하여 寺内가 신랄히 비판을 가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⁴⁶⁾

일제는 이처럼 왕공족에 대한 고립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우대 정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조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였다. 왕공족에게 일본 황족에 준하는 예우와 전하의 경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점과 매년 150만원의 세비를 지급한 점 등은 그 우대 정책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우대 정책은 조선 왕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편이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식민 통치를 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즉, 일제는 일본 황실로부터 특별히 예우를 받고 있는 조선 왕실의 모습을 크게 선전함으로써 그들의 식민통치가 가지는 폭력성을 교묘히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小宮 이왕직 차관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45) 『순종실록』부록 권1, 1910년 12월 30일.

46) 곤도시로스케, 『앞의 책』, pp.117~118.

“조선 병합에 대해 외국에서는 여전히 오해를 하고 있다. 우리 국가와 황실에서 이왕가를 얼마나 융숭하게 예우하고 있는지 모르는 나라가 너무 많다. 우리는 먼저 이 오해를 일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왕가의 현 상황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⁴⁷⁾

그리고 이러한 취지 아래 일제는 그들의 보호를 통해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조선 왕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조선의 궁궐을 개방한다. 궁궐의 개방은 이미 1909년 11월 1일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설치하고 일반사람들에게 관람을 허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⁴⁸⁾ 그런데 1912년 5월 2일에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인정전과 비원 등에도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⁴⁹⁾ 즉, 당시 순종이 거쳐하고 있던 창덕궁 내까지 일반인들의 출입이 허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일제는 이러한 궁궐의 개방을 통해 ‘정권쟁탈과 음모의 장’이었던 조선 궁궐이 일제의 보호 아래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계’로 변모되었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선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한편으로 조선시대 내내 이어져 내려온 宮禁의 원칙이 깨어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궁중에 대한 일제의 접촉을 금지하는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이것은 기존에 조선 민중들이 그들의 왕실에 가졌던 경외감이 점점 사라져 감을 의미했다. 한국 황제였던 순종이 기거하는 창덕궁 안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궁궐의 신성성은 점점 약화되었고, 이는 조선 왕실이 가지는 권위의 해체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합병 당초부터 계속되어 온 조선 왕실에 대한 우대 정책과 고립화 정책

47) 곤도시로스케, 『앞의 책』, p.118.

48) 『순종실록』권3, 1909년 11월 1일.

49) 『순종실록』부록 권3, 1912년 5월 2일, “仁政殿 秘苑 昌慶苑 特別縱覽者 許可取扱規定 告示于外方.”

은 결국 왕실을 약체화시키고 조선 민중들로부터 그들을 유리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이는 조선 왕실을 상대로 한 민중들의 소송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점에서 그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⁵⁰⁾ 예컨대 1914년 2월 2일 이왕직 직원들은 慶善宮의 토지 지적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라남도 와 충청북도 및 경기도 등지로 파견되기도 했다.⁵¹⁾ 또한 1920년 4월 동경에서는 영친왕에 위해를 가하려 했던 사건까지 발생한다. 재일유학생 徐相漢이 영친왕의 결혼식을 앞두고 비밀리에 폭탄을 제조하여 가례 당일 영친왕과 방자비가 탄 마차에 폭탄을 던지고 외무성과 내무성의 폭파 및 齋藤 총독과 이완용 등에 대한 암살을 계획하다가 검거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⁵²⁾ 물론 서상한의 거사는 영친왕 및 조선 왕실에 대한 반감이라기 보다는 일제의 조선 식민 통치에 대한 결사반대라는 측면이 더욱 강하다.⁵³⁾ 하지만 서상한의 거사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영친왕에게 폭탄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 황실의 황태자였던 영친왕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려고 계획했다는 점은 그만큼 조선 왕실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가 되기 때문이다. 즉, 구체제의 최고 지배층으로서 조선 왕실이 일반 민중들에게 미치고 있던 심적 지배력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제시대 초기부터 우대 정책과 고립화 정책을 통하여 왕공족의 약체화를 실현해 간 일제는 이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왕공가 정책을

50) 경선궁의 토지 지적 분쟁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함한희, 「朝鮮末·日帝時代 宮三面農民의 社會經濟的 地位와 그 變化」, 『韓國學報』18, 일지사, 1992.

박이준, 「나주 궁삼면 토지탈환운동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51) 『순종실록』부록 권5, 1914년 2월 2일.

52) 『동아일보』, 1920년 6월 10일.

5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7,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6, pp.409~410.

마무리하고자 했다. 바로 고종과 순종의 사후 조선 왕실의 관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그것이다. 조선 민중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고종과 순종이 살아있는 한 조선 왕실의 약체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對왕공가 정책을 보다 확실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고·순종의 사후 조선 왕실의 새로운 상징이 될 다음 세대, 즉 영친왕·이건·이우·덕혜옹주 등에 대한 관리방침의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다.

물론 이들과 조선민중 사이의 연결고리가 고·순종과 조선민중 사이의 그것보다 미미하고 약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일제가 기존에 행했던 對왕공가 정책은 이미 조선시대 이래로 구축되어왔던 한국 황실의 신성성과 절대성을 끊임없이 해체시켜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통치자의 입장에서 조선 왕실의 후예들이 가지는 상징성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던 것이다. 민주공화정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조차 대한민국임시헌법(1919.9.11) 제1장 제7조에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⁵⁴⁾이라는 규정을 두었던 모습은 일제의 이러한 우려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설명해주는 주요한 일례라고 할 수 있다.

1921년 1월 10일 이왕직의 서무과장이었던 今村軀이 齋藤實 조선총독에게 제출한 의견서는 당시 일제 당국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 어떠한 방침 아래에서 세부 계획안을 세워두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왕가에 관한 일과 함께(李王家に關する事とも)」⁵⁵⁾라는 제목의 의견서에서 今村은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조선통치에 있어서 高等政策으로 이왕가에 대응해야 할 어떤 이유도 있지 않다”는 의미심장한 말로 의견서를 시작하고 있다. 조선민중들이 민사상 이왕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심지어는 왕세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조선 왕실에 대한

54) 韓詩俊, 『大韓民國臨時政府法令集』, 국가보훈처, 1999, p.44.

55) 「李王職財産整理大要」,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조선총독부의 고등정책은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이었다.

특히 이 시점은 1919년 1월 고종이 봉어한 직후이다. 대한제국 황권의 최고 상징이었던 고종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한말 통감부에 의해 진행되었던 대한제국황실 약화정책의 주요대상은 명백히 고종이었다. 모든 권력이 고종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한국을 신속히 식민지화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던 막대한 권력을 남김없이 해체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면서도 필수적인 작업이었다. 하지만 권력의 해체가 곧바로 그가 가지는 상징성의 해체로 이어질 수는 없었다. 약 44년 동안 전제군주의 지위에 있으면서 한국 민중을 지배했던 고종이라는 존재는 식민지 조선의 독립 가능성을 끊임없이 연장시켜주는 최대 심벌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고종의 죽음은 한국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독립의 가능성을 제시해주던 강력한 심벌이 사라졌음을, 반대로 일제의 입장에서는 조선 식민통치에 있어서 가장 걸끄러웠던 장애물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제 금촌의 말처럼 “**금후 시간의 흐름과 함께 李花⁵⁶⁾의 색채가 점점 쇠퇴할 것은 필연의 도리**”였다. 그리고 今村은 이후 이왕가에 대한 대책으로 王家와 관련된 자들이 왕가를 내세우며 분요를 일으킬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것과 왕가가 격심한 불만을 품지 않도록 할 것 등의 2가지 방향만을 제시하면서 조선에서 대왕공가 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금후 조선 왕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등정책도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던 그였지만, 결코 방관할 수 없는 한 가지 중대 사안이 남아 있었다. 순종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앞으로의 대왕공가 정책에 있어서 가

56) 李花는 오얏꽃을 뜻한다. 오얏이 한자로 ‘李’이고 이는 李氏의 성자이기 때문에, ‘이화’라고 하면 조선왕실을 상징하게 되었다.

장 큰 분기점이 될 순종 사후의 대비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⁵⁷⁾

금후에 있어서 중요한 일로서는 현재 왕(=순종)의 죽음 후에 처리할 한 가지 일이 아직 남아있을 따름이다. 지금 왕은 체질이 약한데다 신장엔 숙환이 있고 니코틴 중독에 걸려 수명이 장차 4~5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 기회야말로 對王家 정책에 최후의 결단을 도모하여 영구히 번거로운 방해물[煩惱]과 어지러운 임시변통[紛更]들을 끊어낼 절호의 기회이다. 이와 동시에 또한 왕가에 붙어있는 무리가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따져봄에 따라 제책을 세우고 움직이기 시작할 시기이다. 지금부터 신중이 고려하여……일을 당하면 단숨에 이를 단행하고, 그 사이 이들의 어지럽힘을 용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要綱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一. 이왕직을 東京으로 옮길 것.
- 二. 그 출장소를 京城에 두고 사무는 재산관리, 제사, 妃와 姬⁵⁸⁾에 관한 사항에 그칠 것.
- 三. 관제를 개정하고 인원의 大淘汰를 단행하며, 퇴직자에게 상당한 賜金을 지급할 것.
- 四. 재산의 大整理를 실시하여 관리하기 편하게 하고, 사업의 大縮小를 실행할 것.
- 五. 妃와 姬를 석조전으로 옮겨 기거시킬 것.
- 六.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 비원 등은 잠시 경영을 총독부에 위탁하고 시기를 보아 소관을 바꾼 후 공원으로 공개할 것.

57) 강동진은 그의 저서에서 금춘의 의견서에 나타나는 7개의 要綱이 의견서 제출 당초부터 시행해야 했던 사항으로 서술하고 있다(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pp.173~174). 하지만 원문에 따르면, 금춘은 의견서에서 순종의 사후 조선 왕실에 대한 처리방침으로 이 요강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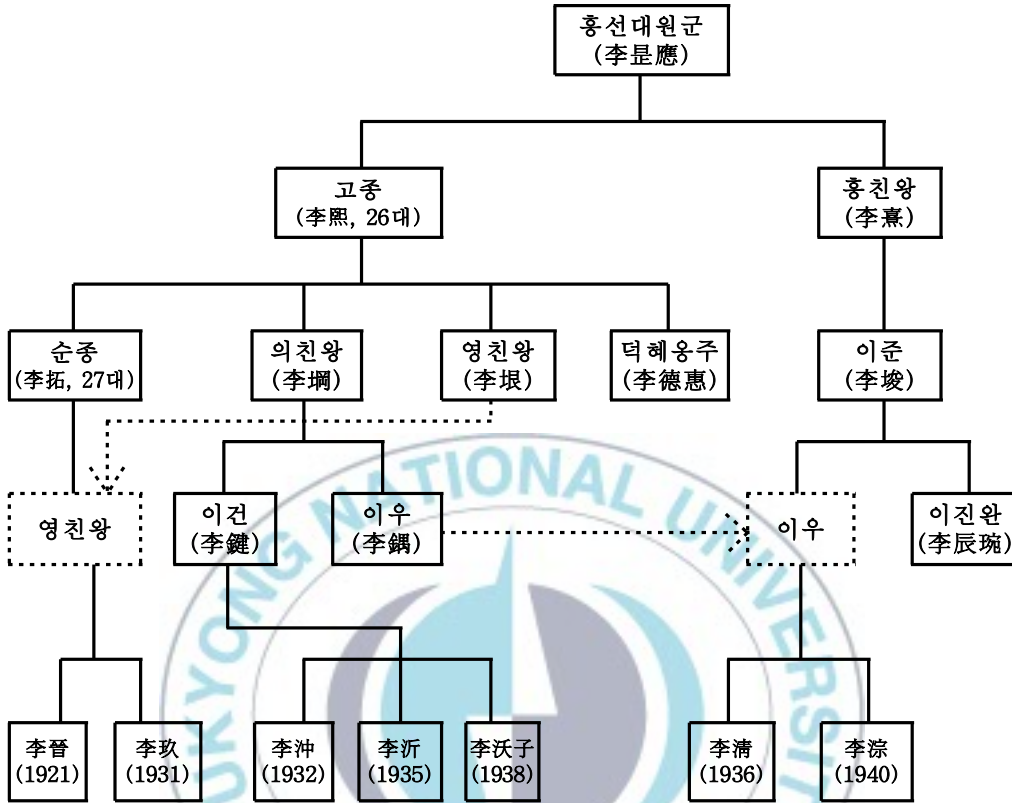
58) 여기에서 妃는 순종의 배우자였던 純貞孝皇后 尹氏를 뜻하고, 姬는 고종의 고명딸이었던 덕혜옹주를 지칭하는 것이다.

七. 지금 창덕궁의 여러 전각은 왕(世子)⁵⁹의 별저로 해두고 기회를 보아 궁 내성 소관으로 옮겨 離宮으로 삼을 것. 諸門 및 宮殿은 옛날의 원형을 없앨 것.

위의 내용에서 보이듯이, 1921년 당시 今村은 순종의 사후 대비책으로 7개의 要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 내용들은 1926년 4월 순종의 죽음 이후 원안 그대로 또는 변형된 모습으로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한다. 이 7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당시 일제는 조선 내에서 왕궁가, 즉 조선왕실과 관련된 모든 자취를 제거하고자 계획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제거대상 중 첫 번째는 물론 왕궁가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즉 왕공족이다. 이러한 일제의 의도는 첫 번째 조항에서 바로 드러난다. 왕공족을 관리·감독하는 이왕직을 조선의 경성에서 일본의 동경으로 옮기려는 계획이 그것이다. 이왕직의 소재지를 옮긴다는 것은 단지 관사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관사의 이동은 곧 그 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인물의 공간적 이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이동의 중심에는 영친왕이 있다. 영친왕은 순종 사후 이왕의 직위를 계승하며 왕궁가를 대표하게 될 가장 중요한 왕족이었고, 왕위계승과 동시에 이왕직은 당연히 영친왕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했다. 그런데 일제는 이미 이왕직을 일본으로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사전에 세워두고 있었고, 이는 이왕 계승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친왕을 일본에 상주시키려는 일제의 교묘한 책략이었던 것이다. 일곱 번째 조항에서 창덕궁을 영친왕의 별저로 삼는다는 내용도 그의 동경 상주를 염두 해 둔 계획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영친왕은 1926년 순종 사후 이왕을 계승한 뒤 조선 경성에 거주하지 않고 일본 동경에 신설된 李王職 東京邸에서 생활하게 된다.

59) 여기에서 王은 훗날 순종의 사후 왕위를 계승하게 될 王世子 즉, 당시의 영친왕을 지칭하는 말이다.



<표2> 일제시대 조선 왕실 가계도

그런데 이러한 도일 정책은 비단 영친왕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고종의 붕어 직후 주요 왕공족의 일본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⁶⁰⁾ 의친왕 李堧의 장남인 李勇吉이 1921년에⁶¹⁾, 차남인 李鍋가 1922년

60) 뒷장에서 상세히 기술하겠지만, 아래에 언급될 이건과 이우 그리고 덕혜옹주 가운데 일본으로 유학 갈 당초부터 법적으로 왕공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는 이준 공을 계승한 이우뿐이었다. 이건과 덕혜옹주는 1926년 「王公家軌範」이 제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법적으로 왕공족의 범위 내에 속하게 된다.

61) 이용길은 이건의 兒名이다. 이건이 일본으로 유학 간 시점에 관해서는 확실히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영친왕이은진』에서 '1921년 1월 24일에는 부왕 고종황제의 삼년상을 보기 위하여 왕세자만이 경성으로 돌아가셨다가 1월 31일 무사히 귀경하셨다. 마사꼬 비에게는 회임의 경사가 있으셨고, 3월 24일에는 着帶式이 행해졌다. 이즈음 왕세자의

7월 5일에⁶²⁾ 각각 일본 유학길에 올라 학습원에 입학한다. 이후 이 2명의 공족은 영친왕과 함께 일본 군인의 길을 걷게 된다. 뒤이어 1925년 3월 20일에는 고종의 딸 덕혜옹주가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⁶³⁾

<표2>는 일제시기 왕공족으로 인정받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인물들을 토대로 만든 가계도이다.⁶⁴⁾ 여기에서 일제의 왕공족 도일 정책에 따라 공식적으로 일본에 유학 간 인물은 영친왕 이은과 더불어 이건, 이우, 덕혜옹주 등 4명이다. 고종 계열에 있었던 구성원 중 이미 장성해 있던 순종과 의친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인물들이 10세 초반에 일본으로 끌려간 것이다. 이는 대한제국의 최고 상징인 고종과 혈연적으로 직접 연결되는 그 후예들이 모조리 일본에 상주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순종의 다음대에 속하면서 일본으로 유학가지 않았던 인물은 이준의 딸이었던 이진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엄밀히 따진다면 고종의 직계 자손이 아닌 조카 손녀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서 이진완은 고종의 직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민중들로 하여금 고종에 관한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1916년 5월 18일 출생한 그녀는 1933년 3월 24일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⁶⁵⁾ 1934년 12월 20일 尹源善과 혼인한다.⁶⁶⁾

일제는 이처럼 고종 사후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선 왕실의 후계자들

이복형 이강공의 제1공자 이용길이 유년학교 입학을 위하여 상경, 휴일에는 곧잘 도리이사까 어전에 놀러 오셨다고 한다.’는 내용을 통해 그가 대략 1921년에 도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왕은전기간행회, 『앞의 책』, p.244.).

62) 『동아일보』, 1922년 7월 6일.

63) 『순종실록』부록 권16, 1925년 3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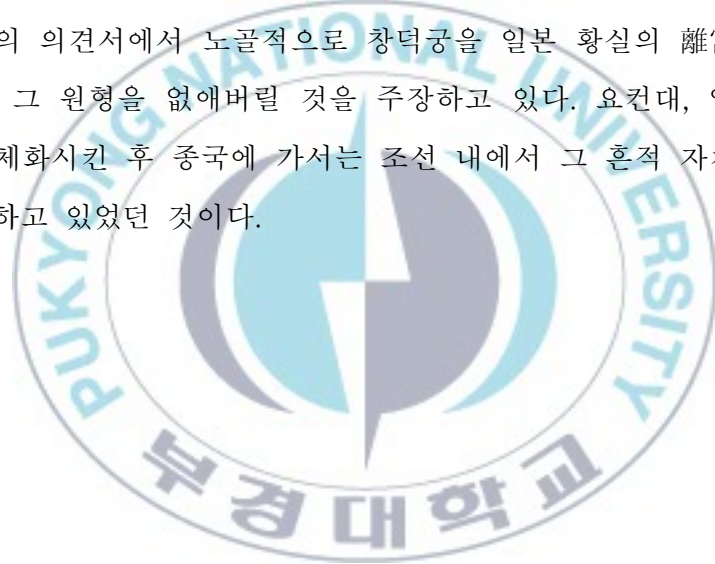
64) 본 가계도는 『조선연감』(소화9년도-소화14년도)에 왕족과 공족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인물들과 『영친왕이은전』 등에 나타나는 조선왕실 가계도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여기에서는 논지의 전개상 왕공족의 배우자는 생략했다. 『王公家軌範』에 의하면 왕공족(男)과 혼인한 그 妃들도 왕공족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참고로 덕혜옹주와 이진완은 왕공족이었으나, 결혼과 동시에 왕공가를 떠나면서 그 지위도 함께 상실하게 된다.

65) 『조선연감』소화10년도, 경성일보사·매일신보사, 1934, p.5.

66) 『조선연감』소화11년도, 경성일보사·매일신보사, 1935, p.5.

을 일본으로 유학시킴으로써, 고종으로 표상되는 왕실의 자취를 조선 내에서 삭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앞으로 조선에서 이들을 빌미로 일을 꾸미려는 세력들의 계획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기도 하다. 즉, 일제는 공간적으로 왕공족과 조선 민중들의 완전한 단절을 꾀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은 순종 사후 이왕을 계승한 영친왕의 일본 상주를 통해 완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제는 조선 왕실의 상징적 시설물인 궁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훼손 작업을 실시하여 그들의 자취를 하나하나 없애나간다.⁶⁷⁾ 특히 금춘은 그의 의견서에서 노골적으로 창덕궁을 일본 황실의 離宮으로 만들고 동시에 그 원형을 없애버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일제는 조선 왕실을 약체화시킨 후 중국에 가서는 조선 내에서 그 흔적 자체를 삭제하고자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67) 일제가 조선 왕실의 궁궐을 훼손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성시, 「조선왕조의 상징 공간과 박물관」,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2004.
홍순민, 「日帝의 植民 침탈과 景福宮 훼손」, 『문명연지』5권1호, 한국문화학회, 2004.

Ⅲ. 재일 왕공족 관리체제의 실상

일제는 합병 당초부터 조선 왕실에 대한 약체화 정책을 통해 조선 내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나갔다. 그리고 이제 주요 왕공족을 대거 渡日시켜 일본에 상주하게 함으로써 조선 내 왕실의 자취를 완전히 삭제하고자 했다.

일제는 치밀한 계획을 통해 조선 왕실의 후계자들에게서 ‘조선 왕족’이라는 옷을 빼앗아버리고 ‘재일 왕공족’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들은 재일 왕공족에게서 더 이상 조선 왕실의 옛 흔적을 찾아낼 수 없도록 조치했던 것이다. 이제 조선 왕실의 후계자들은 ‘재일 왕공족’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일본 내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하지만 재일 왕공족에게서 조선 왕실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이동만으로는 불가능했다. 재일 왕공족을 일본 사회 내로 자연스럽게 흡수시켜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느끼기에도 자신이 조선 왕족이었음을 망각해버릴 때 비로소 일제의 대왕공가 정책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일제의 왕공족 도일 정책에 따라 일본으로 끌려간 재일 왕공족들이 어떻게 일본 체제 내로 흡수되었으며, 어떠한 조직 속에서 철저히 관리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재일 왕공족에 대한 처우

1907년 12월 영친왕의 일본 유학행을 시작으로 이건, 이우, 덕혜옹주 등 조선 왕실의 주요 인물들은 줄줄이 일본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최중심부였던 동경에 상주하게 된다. 이처럼 조선 왕실의 후예들은 왕공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체제 속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당시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재일 왕공족은 분명 이방인이었고, 일제는 이제 이들을 일본 체제 내로 어떻게 흡수시켜 나갈 것인지에 관해 고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시 말해서, 조선 왕공족 개개인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에게까지 그들은 천황이 통치하는 제국 내의 충실한 구성원으로서 인식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일제의 의도 하에 재일 왕공족이 일본 체제 속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王公家軌範의 제정

일제가 재일 왕공족을 일본 체제 속으로 흡수시키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왕공족’이라는 신분이 가지는 모호성의 해결에 있었다. 이 모호성은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왕공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일본이라는 사회체제 안에서 그들의 신분을 법적으로 어떻게 위치 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왕공족의 범위가 가지는 모호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일제는 합병 당초 천황의 조서로 대한제국 황실에 왕공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기는 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당시 천황의 조서는 한국황제 李堉을 창덕궁이왕으로, 태황제 李熙는 덕수궁이태왕으로, 황태자 李垠은 왕세자로, 흥친왕 李熙와 의친왕 李垞은 공으로 삼고, 그 배필 또한 각각

왕비, 태왕비, 왕세자비, 공비 등으로 칭한다는 내용이었다. 조선 왕실 자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들 중 王公의 지위를 부여받은 당사자와 그 정식 배필에게만 ‘왕공족’이라는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즉, 엄밀히 따지자면 합병 당시 정식 왕공족으로 인정받았던 인물은 이왕, 이왕비(尹妃), 이태왕, 왕세자, 이희, 이희공비(李妃), 이강, 이강공비(金妃) 등 총 8명뿐이었다. 나머지 조선 왕실의 구성원들은 공식적으로 왕공족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이다. 때문에 천황의 조서에는 ‘대대로 따르는 도리에 있어서는 짐이 마땅히 법도와 의례를 따로 정하여 李家의 자손으로 하여금 대대손손 이에 의지하고 복록을 더욱 편안히 하여 영구히 행복을 누리게 할지라.’는 문구를 말미에 삽입하고 있다. 후일 따로 규범을 만들어 이러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여지를 남겨두었던 것이다.

이처럼 합병 당시 공포되었던 천황의 조서는 불완전한 규정이었기에, 일본 궁내성은 왕공족 내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勅許를 통해 임시방편으로 대응해나갈 수밖에 없었다. 李熙의 죽음으로 인해 1912년 9월 20일 李垞⁶⁸⁾이 공의 지위를 계승할 때도 그러했고⁶⁹⁾, 이준이 죽고 이강의 둘째 아들 李鐸가 계승자가 되어 그 지위를 이어받을 때도 천황의 特旨에 따른 것이었다.⁷⁰⁾

특히 1921년 8월 18일 영친왕과 方子妃 사이에 ‘日鮮融和의 상징’인 왕세손 핏이 태어나자 천황은 특별히 합병 당시와 같은 형식의 詔書를 공포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詔書

68) 이준의 원래 이름은 李垞鎔이었으나, 公位를 계승할 때 「궁내성고시」제8호로 그 성명을 이준으로 개명했다.

69) 『조선총독부관보』제46호, 1912년 9월 25일자. 「궁내성고시」제7호

70) 『순종실록』부록 권8, 1917년 5월 28일.

집이 생각건대, 왕세자 이은은 李家의 계승자[元儲]로서 명성이 날로 높아가고 덕을 쌓음이 달로 높아가서 실로 국내외에서 우러러보는 바이다. 우리 선대황(=명치천황)의 사랑이 가장 두터웠고 오랫동안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집의 왕세자에 대한 情誼도 특별히 돈독하여 친족과 다를 바가 없다. 이제 이가에 경사가 있으니, 그 태어난 바의 남자는 세가술순의 계사로서 마땅히 진정으로 좋은 복록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대우하기를 황족의 예로써 하고, 특별히 전하의 경칭을 쓰게 할 것이다. 이에 선대황의 기록하신 뜻을 받들어 특별히 대우할 뜻을 분명히 해둔다.⁷¹⁾

하지만 이러한 계승과 관련된 사항보다 더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은 바로 왕공족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못했던 나머지 조선왕실의 구성원들에 대한 처리문제였다. 이건과 덕혜옹주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건은 이강의 첫째 아들로 1917년 이준의 양자로 들어가 공위를 계승받았던 이우의 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우가 공위를 계승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동생은 왕공족인데 반해 형은 왕공족이 아닌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1922년 12월 26일 동아일보의 한 기사에서 여실히 들어난다.

◇ 동귀휴가를 리용하야

동경에 류학하는 리우공던하 『李錫公殿下』와 리용길 『李勇吉』씨는 저울방학을 리용하야 경성에 도라오게 되야 리우공던하는 이십삼일 저녁에 리용길씨는 이십사일 저녁에 형제가 전후하야 무사히 남대문에 도착하얏더라.⁷²⁾

1922년 당시에 이건과 이우는 모두 일본 동경에서 유학 중이었다. 그리고

71) 이왕은전기간행회, 『앞의 책』, pp.246~247.

72) 『동아일보』, 1922년 12월 26일자.

본 기사는 유학 중이던 公家の 형제들이 휴가차 조선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명칭에 있어서 이우는 전하의 경칭을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이건은 다만 氏라는 호칭이 붙어 있을 따름이었다.⁷³⁾ 이용길 즉, 이건은 정식 왕공족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건 당사자에게도 분명 이치에 맞지 않는 불만스러운 점이었다.⁷⁴⁾

이처럼 법적으로 이건은 왕공족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유학이라는 명목 하에 일본에 거주시킨 이건을 어떻게 예우할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비록 왕공족의 범위 안에 있지 못하지만, 이건은 후일 이강의 뒤를 이어 公家の 계승자가 될 사람이었고 천황의 충실한 신하로 탈바꿈되어야만 할 인물이었다. 때문에 이건 자신이 느끼기에,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보기에, 그는 실질적인 조선 왕공족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다.

1923년 3월 이건의 東京陸軍幼年學校의 입학과 관련하여 궁내성의 요청에 따라, 육군 교육총감부에서 작성하여 육군대신에 보고되었던 이건에 관한 예우사항은 다음과 같다.⁷⁵⁾

教庶第429號

李公子 御취급에 관한 규정 송부의 건 통첩

교육총감부 서무과장 大村有隣

육군성부관 松木直亮 殿

73) 이용길은 이건의 兒名이다.

74) 이건은 그의 수기를 통해서 당시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겪었던 부당한 대우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다. 일본 유학 후 처음 입학한 학습원에서 동생 이우에게 경례를 하고 동급생들에게 경멸을 당했던 당시 상황은 이건에게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었다(이방자, 이건共著, 『在日 英親王妃의 手記, 在日 李鍵公의 手記』, 新太陽社, 1960, pp.149~153).

75) 『大日記乙輯』, 大正12年, 「李勇吉東京陸軍幼年學校へ入學の件」(<http://www.jacar.go.jp/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이강공 전하의 첫 번째 아들 이용길이 오는 4월부터 동경육군유년학교에 입학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취급에 관하여 별책대로 규정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송부합니다.

李勇吉 취급에 관한 규정의 요지(※대정12년 4월 교육총감부)

一. 방침

황족에 準하는 취급을 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황족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二. 學術科에 관한 건

생도와 동일한 교과서열 내에 들어갈 것.

三. 경례, 경칭에 관한 건

1. 교내의 여러 교관[校附諸官] 및 여러 생도가 직접 이름[名前]을 부를 경우에는 殿下의 존칭을 부치지 않을 것.
2. 외출 및 귀교할 때 玄關番은 계단 아래로 나와서 경례를 행할 필요가 없음.

四. 기거에 관한 건

1. 居室은 별실을 이용하여 충당할 것.
2. 當分間 家從 1명을 거느리시더라도 지장 없을 것.
단, 家從은 별실에 기거할 것.
3. 入浴은 황족욕실에서 가장 나중에 하실 것.
4. 변소는 직원용을 사용하실 것.

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육군성 내 교육총감부에서 작성한 이건에 관한 관리방침의 기본은 황족에 준한 예우였다. 물론 일본 황족과 완전히 동일한 대우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왕공족이 아니었던 이건이었기에, 황족에 준한 대우와 더불어 제한적이지만 전하의 경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분명 예외적인 특별한 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이건 또한 학습원과는 달리 유년학교에서는 ‘굴욕도 받지 않고 그렇다고 우대는 받지 않았으나 그러나 좋은 대우였다’고 말하고 있다.⁷⁶⁾ 이처럼 일제는 이건에 대해 거의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신분에 관한 당사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그가 일본 사회 내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이건 외에도 왕공족에 포함되지 못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은 덕혜옹주⁷⁷⁾였다. 덕혜옹주는 1912년 5월 25일 고종이 복녕당 양귀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막내딸이다. 그런데 이 덕혜옹주의 경우에는 왕공족인지의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왕가로의 入籍 자체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⁷⁸⁾ 權藤四郎介에 의하면, 덕혜옹주는 왕가에 입적되지 못하다가 6살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완전히 왕가에 입적되어 이태왕의 왕녀로 인정받게 되었다.⁷⁹⁾ 또한 翁主라는 존칭을 사용하는 것마저도 궁내성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덕혜옹주 또한 이건과 같이 불완전한 신분을 가진 채 1925년 일본으로 유학 간 것이다.

왕공족이라는 신분이 가지는 두 번째 모호성은 왕공족의 지위에 관한 것이다. 즉, 일본 사회 내에서 왕공족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가에 대한 모호함이다. 합병 당시 천황의 조서에는 왕공족을 ‘황족의 예로 대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는 이후 왕공족의 지위에 관해서 끊임 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다. 바로 왕공족을 황족으로 볼 것

76) 이방자, 이건共著, 『앞의 책』, p.152.

77) 덕혜옹주는 태어난 이후 福寧堂阿只氏로 쪽 불리다가 1921년 5월 4일 德惠라는 호를 하사받게 된다(『순종실록』부록 권12, 1921년 5월 4일).

78) 權藤四郎介, 『앞의 책』, pp.283~286.

79) 本馬恭子は 그의 저서에서 덕혜옹주의 왕가입적이 지체된 원인에 관해 서술하였다. 그 중 하나가 왕족은 조선민족들의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실마리가 될 수 있으므로 왕족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혼마야스코著, 이훈譯, 『덕혜옹주』, 역사공간, 2008, pp.47~48).

인가 아닌가에 대한 첨예한 질문이 그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 대립이 극대화되는 대표적 사건이 영친왕과 方子妃의 결혼이다.⁸⁰⁾ 당시 영친왕은 왕족이었고, 방자비는 梨本宮守正王의 첫 번째 왕녀, 즉 황족이었다. 일제는 명목적으로 ‘內鮮融和’라는 식민 이데올로기의 상징으로써 이 정략결혼을 추진하지만 한 가지 큰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일본 황실의 家憲인 「황실전범」39조에 ‘**황족의 婚嫁는 동족 또는 勅 旨에 따라 특별히 허가를 받은 화족에 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황족의 결혼대상이 같은 황족 또는 화족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영친왕의 신분인 왕족이 가지는 법적 지위가 문제시된 것이다. 왕족과 황족의 결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왕족을 황족(또는 화족)으로 간주하거나, 황실전범을 개정하여 황족과 왕족의 결혼을 인정해야 했다.⁸¹⁾ 이처럼 일본 정부 내에서 큰 혼란을 겪은 이 결혼은 ‘**황족여자는 왕족 또는 공족에게 시집갈 수 있다**’는 「황실전범증보」를 통해서 힘겹게 실현된다. 하지만 결국 「황실전범증보」 또한 임시방편이었을 뿐, 왕공족이 황족인지 아닌지에 관한 쟁점은 여전히 확실히 매듭지어지지 못한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제가 이처럼 조선 왕실에 대해 ‘황족의 예로 대우한다’라는 모호한 규정을 계속해서 놔둘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이는 명분과 현실의 괴리라는 이중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80)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친왕과 방자비의 결혼과 관련한 일본 정부 내의 첨예한 견해 차이에 관해서는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그 내막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金英達, 「朝鮮王公族の法的地位について」, 『靑丘學術論集』14,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1999.

스즈키 마사유키著, 류교열譯, 『근대일본의 천황제』, 이산, 1999.

坂元眞一, 「조선왕실 자손들과 그 대한민국 국적」, 『서울국제법연구』6권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1999.

신조 미치히코, 「이은(영친왕)-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문제와 왕족의 양면성: 정략결혼은 왜 필요했을까?」, 『역사비평』75, 2006.

81) 신조 미치히코, 「앞의 논문」, p.318.

일제는 병합 당시 대한제국의 지배층, 특히 황실에 대한 우대를 약속함으로써 식민지화를 보다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우대화의 핵심적 요소가 바로 ‘일본 황족에 준하는 예우’였던 것이다. 이는 분명 유구국왕이 華族으로 일본 사회 내로 편입된 것에 비할 수 없는 특별한 우대임이 틀림없었다. 이러한 우대는 대내적으로는 조선 왕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는데 크게 기능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조선 왕실이 신하의 입장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가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강력하게 선전했다. 바로 일본이 대왕공가 우대 정책을 통해 얻고자 했던 중요한 명분인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공족을 완전히 황족화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황족에 준하는 예우’란 말 그대로 황족에 준하여 대우하겠다는 뜻이지 왕공족이 황족에 완전히 포함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제는 명분을 위해 조선 왕실을 황족에 준하여 대우했다. 하지만 이 명분에 버금가는 실체가 그들에게 존재했던 것이다. 바로 ‘만세일계’의 일본 황실이 가지는 貴種性を 철저히 유지해야한다는 사실이다.⁸²⁾ 그리고 이 귀종성 유지를 위해 일제는 왕공족의 황족 편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이는 영친왕과 방자비의 결혼을 「황실전범」의 증보라는 형태로 성사시킨 것에서도 그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일제는 이 증보를 통해 왕공족이 황족이 아님을 명시하는 일을 피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왕공족을 황족으로 간주하지 않고 혼인을 성사시킴으로써 고유한 그들만의 황통을 유지해 나갔던 것이다.⁸³⁾ 요컨대, 일본은 이 명분과 실제라는 모순적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었고, 이러한 딜레마가 ‘왕공족’이라는 모호한 지위를 창출하고 유지

82) 스즈키 마사유키는 그의 저서에서 근대 시기 일본이 황실의 귀종성을 유지해야만 했던 원인과 그 유지 과정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스즈키 마사유키著, 류교열譯,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1999.)

83) 신조 미치히코, 「앞의 논문」, p.321.

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왕공족이 가지는 신분상의 모호함은 도일정책으로 말미암아 일본에 거주하게 될 그들에 대한 관리정책에 있어서도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의 의도대로 재일 왕공족을 일본 사회 속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왕공족이라는 신분의 명확성이 전제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앞으로 일본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활해야 할 왕공족과 일본 황실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선 및 일본 민중들과의 관계가 확실히 정립되어야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무수한 문제들은 원만히 해결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왕직 사무관이었던 權藤四郎介도 ‘**왕가가 따라야 할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왕공가의 재정처리와 왕공족의 신분 그리고 왕공족과 일반 민중과의 법률적 관계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발생하였으므로 총독부 및 이왕직의 업무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하면서 명확한 규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었다.⁸⁴⁾ 이리하여 만들어지게 된 산물이 바로 「왕공가궤범」이다.⁸⁵⁾

1926년 12월 황실령 제17호로 공포된 「왕공가궤범」은 조선 왕공가 및 왕공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家憲이다. 이는 「황실전범」과 기타 황족에 관한 제반 법규를 본받고 조선의 관습을 감안하여 왕공족이라는 身位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밝히고 있다.⁸⁶⁾ 내용은 총 7編 212章 215條로 나누어져 있고 여기에 附式이 첨가되어 있는 형태이다.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한 왕공족 신분이 가지는 모호성을 중심으로 궤범의 내용을 간략히

84) 곤도시로스케, 『앞의 책』, p.156.

85) 「왕공가궤범」에 대한 작업의 착수는 이미 1916년 12월부터 이루어진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영친왕과 방자비의 혼인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만들어졌던 「왕공가궤범안」은 내용상 왕공족을 황족으로 간주하는 형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1917년 9월 25일 추밀원에서 정식으로 철회된다. 이후 「황실전범증보」를 통하여 법적으로 왕공족과 황족 간의 혼인이 가능하게 되었다(坂元眞一, 「앞의 논문」, pp.175~178).

86) 篠田治策, 「王公家軌範に就て」, 『朝鮮』16, 고려서림, 1986.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편 ‘王家 및 公家’에서는 왕공가의 습계 순서와 왕공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왕공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왕족의 범위(제14조)	공족의 범위(제15조)
王과 王妃 그리고 다음에 게재된 자로서 왕가에 있는 사람은 이를 왕족이라 한다. 一. 왕의 子 二. 은거한 왕 및 그의 子 三. 왕의 長子孫의 계통에 있는 자 및 그의 子 四. 前 각호에 게재된 자의 배우자	公과 公妃 그리고 다음에 게재된 자로서 공가에 있는 사람은 이를 공족이라 한다. 一. 공의 子 二. 은거한 공 및 그의 子 三. 공의 長子孫의 계통에 있는 자 및 그의 子 四. 前 각호에 게재된 자의 배우자
※ 제16조 앞의 두 조항에서 정한 왕공족의 子로서 왕가 또는 공가에 있는 여자는 이를 왕족 또는 공족으로 한다. ※ 제213조 故李太王의 자식으로서 왕가에 있는 자는 이를 왕족으로 한다.	

<표3> 「왕공가궤범」에 규정된 왕공족의 범위

그런데 왕공족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殿下의 경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제19조에서는 ‘왕, 왕비, 태왕, 태왕비, 왕세자, 왕세자비, 왕세손, 왕세손비, 기타 제14조에서 왕의 長子孫의 계통에 있는 자 및 그의 비는 전하의 경칭을 사용케 한다. 공, 공비, 은거한 공 및 그의 비 또한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궤범 공포 당시 故李太王, 즉 고종의 딸이었던 덕혜옹주와 공의 아들이었던 이건은 전하의 경칭 사용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2편 ‘身位’에서는 왕공족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하고, 禁制 및 우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成年, 班位, 敍勳·任官, 身位喪失, 懲戒, 失蹤 등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반위 부분이다. 「왕공가궤범」은 대체적으로 왕공족에게 일반

법령을 적용치 않고 황족에 관한 법령을 準用하는 등 특전을 부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제2편 제40조에서 ‘왕공족의 반위는 황족 다음이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즉, 병합 이래로 준수되어 왔던 ‘대우하기를 황족의 禮로써 한다’는 모호한 규정이 ‘왕공족의 반위는 황족 다음이다’라는 명확한 규정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제 왕공족은 공식적으로 황족의 아래에 위치하는 신분으로 그 지위가 확정된 셈이다.

그리고 뒤를 이어 제3편에서는 財産, 제4편에서는 親族, 제5편에서는 相續, 제6편에서는 喪葬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부칙 제213조에서 ‘故李太王의 자식으로서 왕가에 있는 자는 이를 왕족으로 한다’는 규정을 둬으로써 덕혜옹주가 법적으로 왕공족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처럼 왕공가가 따라야 할 궤범이 새로이 만들어짐에 따라, 기존에 왕공족이 가지고 있던 신분상의 모호성은 일단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제일 왕공족이 앞으로 일본 사회 내에서 차지하게 될 신분과 지위는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왕공가궤범」이 공포된 시점이다. 「왕공가궤범」은 조선 왕실의 상징이었던 순종의 사망 직후 1926년 12월 1일 공포되었다. 이 시점은 이왕을 계승한 영친왕이 조선이 아닌 일본 동경에 영구 상주하게 되면서 왕공족에 대한 도일 정책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시기였다. 즉, 일제의 대왕공가 정책상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기에 본 궤범이 공포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왕공가궤범」에서는 황족에 관한 법령을 準用하고 있기는 하지만, 왕공족의 반위를 황족 다음으로 규정함으로써 왕공족은 황족이 아님을 분명히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이전까지 왕공족과 황족 사이의 명확한 개념규정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일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그렇다면 이처럼 기존에 왕공족에 대한 일제의 입장이 이 시점에서 변화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왕공족의 반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역설적으로 더 이상 왕공족과 황족을 동일시하는 개념이 식민정책상 불필요함을 반증한다. 다시 말해서 일제가 명목적으로 왕공족과 황족의 동일시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왕공족이 가지는 중요성이 크게 추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왕세자에 대한 암살미수사건이 발생하는 등 조선 왕실이 가지는 심적 지배력이 점점 실추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의 죽음은 조선 왕실과 민중 사이의 거대한 연결고리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금춘의 의견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조선총독부 당국자들 또한 이미 간파하고 있던 부분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제는 이제 왕공족과 황족의 모호한 동일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이러한 판단이 「왕공가계법」의 공포를 통해서 체현되었던 것이다. 이는 뒷장에서 살펴볼 영친왕代 이왕직의 축소화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나. 왕공족에 대한 결혼정책

재일 왕공족은 「왕공가계법」의 공포를 통해서 기존에 모호했던 지위에서 탈피하고 일본 사회 안에서 자신의 명확한 위치를 부여받았다. 즉, 천황이 다스리는 제국 내에 법적으로 명확한 신분을 보장받은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재일 왕공족을 일본 사회 내로 자연스럽게 흡수시키는데 있어서 기본 전제조건이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었다. 일제는 이처럼 왕공족의 지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들의 일본 상주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또 다른 정책을 준비한다. 바로 본 절에서 다룰

재일 왕공족에 대한 결혼 정책이 그것이다.

유학이라는 명목 하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 왕실의 후예들은 1920년 영친왕과 방자비의 결혼을 시작으로 모두 일본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1931년 덕혜옹주와 이건이 잇달아 일본 화족 가문과 혼인을 맺었고, 1935년에는 이우가 조선귀족 박영효의 서손녀딸인 박찬주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여기에서는 일제가 영친왕을 시작으로 재일 왕공족에 대한 결혼정책을 추진하게 된 목적과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계책을 수립하여 실행했는지를 시간의 추이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제의 재일 왕공족에 대한 결혼 정책의 첫 번째 대상은 물론 당시 왕세자 신분에 있었던 영친왕이었다. 1907년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유학 가서 줄곧 일본식 교육을 받으며 자란 영친왕에게 있어서 일본인과의 결혼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정략적 수순이었다.⁸⁷⁾ 왕공족 영친왕과 황족 방자비의 결혼은 원래 1919년 1월 28일 동경에 있는 왕세자저에서 거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결혼식을 막 앞둔 1월 21일 고종이 승하하면서 결혼식은 예정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연기된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이었던 山縣伊三郎의 말처럼, 이 결혼에 관하여 조선의 민심이 부정적이었던 상황 속에서 고종의 승하 소식을 비밀로 하고 혼례식을 거행할 경우 매우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⁸⁸⁾ 하지만 형식적인 연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조선의 법도인 3년 복상은 지켜지지 않았고, 1920년 4월 28일 고종 사후 1년 만에 결혼식은 거행되기에 이른다.

이 결혼식은 당시 조선과 일본 양쪽에서 모두 큰 주목을 받았고, 언론은 이 결혼에 관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특히 당시 조선 왕실에 관한

87) 송우혜는 그의 논고에서, 영친왕 이은과 일본인의 정략결혼이 1907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날 때부터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이미 계획되고 있었음을 한말과 일제 시기 신문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내고 있다(송우혜, 『李垠의 정략결혼 연구-언론보도(1907~1920)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88) 곤도시로스케著, 이언숙譯, 『앞의 책』, pp.259~260.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관리들의 기고문이 눈에 띄는데, 아래의 기사가 그 중 하나이다.

「이래왕께서 기뻐하시고, 조선인 또한 폐하의 배려에 감격하다」

李王世子 전하와 梨本宮 전하 따님의 成婚이 알려지니 조선인의 기쁨이 대단하고 폐하의 깊은 배려에 감격했다. 이는 황실 및 이왕가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일선동화의 결실을 거두는 것으로, 머지않아 금후 日鮮人 결혼의 기운을 촉진하고 국민적 동화를 앞당길 것이다. 특히 이래왕께서 만족하심은 대단하여 최근의 새로운 걱정도 깨끗이 잊으셨다고 고미야(小宮) 이왕직 차관은 말했다.⁸⁹⁾

이 기사는 1916년 8월 3일 『東京日日新聞』에 게재된 기사로, 당시 이왕직 차관이었던 小宮三保松이 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小宮 이왕직 차관은 1907년 9월 23일 한국 궁내부 차관으로 부임하여⁹⁰⁾, 궁내부 내 帝室財産整理局의 장관을 겸임하면서⁹¹⁾ 대한제국 황실권력을 주도적으로 해체시켜 나간 장본인이다. 그리고 한일합병 이후에는 이왕직 차관으로 부임하여 실질적으로 왕공족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면서 일제의 대왕공가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었다.

소궁은 이처럼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었다. 그러한 그가 이왕직 차관이라는 공식적인 자격으로 인터뷰한 내용은 당시 일제가 왕공족에 대한 결혼정책을 어떠한 논리 속에서 진행시켜나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담화문에서 그는 영친왕과 방자비의 결혼 소식으로 조선민중들 뿐만

89) 『東京日日新聞』, 1916년 8월 3일자(小田部雄次, 『李方子』, ミネルヴァ書房, 2007, pp.6 5~6에서 재인용)

90) 『구한국관보』3881호, 융희원년 9월 26일.

91) 『직원록』, 융희2년 6월.

이 아니라 고종도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경성의 근황을 전하고 있다.⁹²⁾ 이와 함께 그는 천황의 깊은 배려를 강조하면서, 이 결혼이 ‘일선동화’의 결실이자 상징으로 앞으로 조선인과 일본인들의 통혼을 장려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천황의 우대로 맺어지는 이 축복받은 결혼식이 내선일가의 표상으로 이후 조선과 일본의 민중들이 동화되는데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될 것이라는 논리로 이 결혼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제의 논리는 당시 언론에서 이 결혼을 미화하면서 발표했던 여러 기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정당화 논리이다. 특히 당시 일제의 식민정책을 적극적으로 미화하고 옹호했던 『반도시론』⁹³⁾에서는 ‘王世子殿下의 結婚과 日鮮融和의 장래’라는 제목 하에 이 결혼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⁹⁴⁾ 여기에서 필자는 영친왕과 방자비의 결혼이 효시가 되어 이후에는 公族, 華族, 士族, 平民 등 각 계급으로 통혼이 확산되어야 함을 언급하면서, 日鮮의 동화와 친밀이 혼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경사는 평범한 황가와 왕가의 결혼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행복이며, 장래를 미루어 본다면 ‘旭章旗[일장기]’ 아래 선 일반 민들이 이 결혼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밖에도 당시 이왕직 찬시였던 윤덕영은 기고문을 통해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불신과 반목이 팽배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결혼이 日鮮融和와 日鮮一家의 일단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⁹⁵⁾

92) 小宮 이왕직 차관은 영친왕과 방자비의 결혼이 발표될 당시의 경성이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 분위기였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에 불과했다. 당시 조선민중들의 부정적 여론은 이 결혼식 당일 일본경찰에 의해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던 조선 경성의 모습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동아일보』, 1920년 4월 29일자).

93) 『반도시론』은 1917년 4월 10일에 창간되어 1919년 4월 10일 통권 25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사장은 竹内錄之助이며, 주로 식민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논조의 글을 담고 있다.

94) 『반도시론』제3권 제1호, p.22.

95) 『반도시론』제3권 제2호, 1919년 2월 10일.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논리로 정당화시킨 황족과 왕족의 정략결혼을 통해 일제가 실제로 추구했던 목적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1919년 3.1운동의 발생 등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조선민중들의 반발이 거세졌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도 그 목적성을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팽배해 있던 일제에 대한 조선민중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들은 영친왕과 방자비의 결혼을 내선일가의 표상으로 대거 선전했던 것이다.⁹⁶⁾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했던 실제 목적은 일제가 조선 왕실의 貴種性을 해체시키는데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일제는 자신들의 황실이 가지는 귀종성의 보존을 위해 「황실전범증보」라는 임시방편적인 형태로 본 결혼에 대한 법적 준거를 만든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일본 황실이 가지는 귀종성의 유지는 필연적으로 한국 황실이 가지는 귀종성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황실전범증보」에서는 황족 여자와 왕공족 남자와의 결혼만을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황족 남자와 왕공족 여자의 결혼은 규정해놓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왕공족 여자가 황족 남자인 親王 및 王에게 시집갈 경우 그의 妃가 됨과 동시에 황족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⁹⁷⁾, 결국 그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조선 왕실의 피가 흐르는 황족이 되는 폐단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황족의 혈통에 왕공족의 혈통이 섞이는 결과를 낳는 것은 일본의 天皇家가 가지는 귀종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때문에 황족 남자와 왕공족 여자의 결혼은 「황실전범증보」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반해 황족여자는 臣籍으로 시집갈 경우에는 황족의 列에 있지 않고 「황실전범」에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자비의 경우도 결혼 후에는

96) 이왕은전기간행회, 『앞의 책』, p.238.

97) 『皇室典範』 第30條 皇族ト稱フルハ太皇太后, 皇太后, 皇后, 皇太子, 皇太子妃, 皇太孫, 皇太孫妃, 親王, 親王妃, 內親王, 王, 王妃, 女王ヲ謂フ

황족이 아닌 왕족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야만 했다.⁹⁸⁾ 물론 그들의 아들은 몸속에 일본 황가의 피가 흐르는 조선 왕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조선 왕실의 순수한 혈통이 점점 흐려지게 되어 중국으로 가서는 그 귀종성이 해체됨을 의미했다.

요컨대, 이러한 조치들은 당시 가문 세습에 있어서 父系를 기본으로 하는 원칙을 엄두해 두었을 때, 궁극적으로 일본 황실의 순수한 혈통은 유지시키면서 조선 왕실의 고유한 혈통은 끊어버리고자 하는 일제의 교묘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들이 선전했던 ‘일선융화’의 실체였던 것이다.

조선 왕실이 가지는 귀종성의 해체와 더불어 일제가 정략결혼을 통해 얻고자 했던 실제목적은 왕공족의 일본 상주를 고착화시키는 데 있었다. 앞서 일제가 도일정책을 통해 조선 왕실의 후계자들을 대거 일본 동경으로 移居시킨 배경과 과정에 대해 언급했다. 일제는 이제 일본으로 끌고 온 그들을 일본 내에서 어떻게 영구히 상주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왕공족과 일본인의 정략결혼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혼 이후 영친왕을 일본에 상주시키려는 일제의 계획은 결혼에 즈음해서 당시 궁내대신이었던 波多野가 방자비의 모친인 梨本宮 伊都子에게 ‘**왕세자의 주거는 동경으로 정하고, 使用人도 일본인으로 한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⁹⁹⁾라고 말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실히 엿볼 수 있다. 즉, 일본 궁내성은 결혼식이 성사되기 전에 이미 영친왕 부부의 동경 상주를 기정사실화하며 이를 영친왕의 처가인 梨本宮에 알리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영친왕의 결혼 이후에 궁내대신 牧野伸顯과 조선총독 齋藤實 사이

98) 『皇室典範』 第44條 皇族女子ノ臣籍ニ嫁シタル者ハ皇族ノ列ニ在ラス但シ特旨ニ依リ仍内親王女王ノ稱ヲ有セシムルコトアルヘシ

99) 梨本宮伊都子, 『三代の天皇と私』, 講談社, 1975(小田部雄次, 『앞의 책』, p.64에서 재인용)

에 오고 갔던 서한의 내용은 당시 궁내성과 조선총독부가 영친왕의 동경 상주를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牧野는 ‘……전하께서 영구 귀환하시면 일부 일을 꾸미려는 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어 통치상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세자 및 세자비 전하의 생활에 크게 관련되므로 되도록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¹⁰⁰⁾ 이에 대해 齋藤 총독은 ‘왕세자 귀국 운운의 어리석은 설을 막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저력을 만들어주라’고 답변하고 있다.¹⁰¹⁾ 이처럼 궁내성과 조선총독부는 영친왕이 귀국할 경우 조선 내의 반체제 인물들과 연계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왕세자 부부의 조선으로의 귀환을 막고 영구적인 동경 상주를 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실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영친왕과 방자비의 결혼을 시작으로 재일 왕공족에 대한 결혼정책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왕공가계법」의 공포로 왕공족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진 이후, 1931년 5월 8일 덕혜옹주가 백작 宗武志와 혼인한다. 종무지는 부친의 형, 즉 숙부였던 舊대마변주 宗重正의 양자로 들어가 백작의 지위를 계승한 인물로 화족이었다.¹⁰²⁾

그런데 덕혜옹주의 결혼 전에 그의 결혼상대에 관한 소문이 무수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덕혜옹주의 결혼에 관한 첫 번째 소문은 일본 황족과의 혼약설이었다. 1926년 8월 30일에 일본 황족과의 혼약설이 불거지면서 신문지상에 황족 ‘山階宮藤麿王’¹⁰³⁾이라는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다.¹⁰⁴⁾ 이 山

100) 『齋藤實文書』, 재등실에게 보낸 목야신현 서한, 1923년 11월 22일자(강동진, 『앞의 책』, p.177에서 재인용)

101) 『齋藤實文書』, 목야에게 보낸 재등실 서한, 1923년 11월 26일자(강동진, 『앞의 책』, p.177에서 재인용)

102) 종무지의 아버지는 黒田和志로 (舊)對馬변주 宗重正의 친동생이다. 和志는 (舊)久留里변주 집안인 黒田 가문에 양자로 들어가 자작의 지위를 계승한다. 때문에 그 아들인 종무지는 어릴 때는 黒田武志로 불리었다.

103) 山階宮藤麿王은 山階宮菊麿王의 아들이다. 부친인 菊麿王은 山階宮晃親王의 王子로 한때 梨本宮守修親王의 養嗣子가 되기도 했지만, 1885년에 山階宮으로 복귀하여 晃親王의 후사가 된다. 藤麿王는 이 菊麿王의 三男으로 1928년에 臣籍降下되어 후작 筑

階宮藤麿王과의 혼약설은 약 10개월 후인 1927년 6월 14일에 『중외일보』에 서도 여전히 확인된다.¹⁰⁵⁾ 여기에서는 ‘(상략) 등마려왕던하는 오는 칠월 중순에 어도선하셔서 창덕궁대비던하께 위문하시리라하며 명치삼십팔년의 어출생이시라더라’라고 말하면서 山階宮藤麿王의 조선방문 일시까지 상세히 기재해놓고 있다.

두 번째 소문은 조선귀족과의 결혼설이었다. 특히 이 소문에 대하여 末松 이왕직 서무과장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간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덕혜옹주의 어결혼에 대하여 중내성과 리왕직 사이에 의론이 되는 중인데 응주는 금년 십팔세로 녀자학습원 후기이년(後期二年)에 재학중임으로 스무살 되는 해에 졸업하기로 되어 혼기가 절박하여 가는 중이다. 시집가실 곳은 일본황족과 혼약하신다는 소문도 잇섯스나 조선귀족 중에서 적당한 후보자를 택하게 되리라고 하더라.

[李王職談] 이에 대하여 리왕직 말송(末松) 서무과장은 ‘동경에서 어쩌케 이야기가 되는지 알 수 업습니다마는 이곳 리왕직에서는 아모러한 소식도 듣지 못하얏습니다. 그 내용은 알 수 업스나 이전부터 조선 귀족 측에 덕당한 이를 선택하여 혼인케함이 조켓다는 희망이 잇섯슴으로 귀족과 혼인하게 되실는지도 모르겠다는 소문이 나는 것이겟지요’하고 말하더라.¹⁰⁶⁾

그러나 앞서 말한 황족도 조선귀족도 덕혜옹주의 실제 결혼상대는 되지 못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당시 왕공족 여자와 황족 남자의 혼인에 관한 규정은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황족과의 결혼설

波藤麿가 되었다.

104)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 1926년 8월 30일.

105) 『중외일보』, 1927년 6월 14일.

106) 『동아일보』, 1929년 11월 8일.

은 실현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조선귀족과의 결혼은 위의 기사에서 나타나듯이 조선 왕실에서는 희망하던 바이긴 했지만, 일제의 재일 왕공족에 대한 정략결혼 정책에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처사였다. 때문에 일제의 입장에서 이는 결코 실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결국 덕혜옹주와 백작 종무지의 결혼이 1930년 10월 31일 신문기사를 통해 기정사실화되었고¹⁰⁷⁾, 1931년 4월 14일에 이들의 혼인을 허락하는 칙허가 내려졌음이 언론에 보도되었다.¹⁰⁸⁾ 이리하여 덕혜옹주는 결혼 후 더 이상 왕족이 아닌 화족의 신분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덕혜옹주의 결혼이 있는 후 얼마 되지 않아, 이것이 1931년 10월 5일에 결혼한다. 상대는 해군대좌 松平胖의 장녀인 松平佳子¹⁰⁹⁾로 그녀는 방자비의 외가 쪽 사촌동생이다. 그런데 일제는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하나의 계획을 세운다. 바로 佳子를 廣橋 백작 집안의 양녀로 보내는 것이었다. 당시 『동아일보』에는 이에 관한 사정이 기재되어 있다.

李鍵公殿下 御婚御內許

리건공(李鍵公) 전하의 어혼인은 해군대좌 송평반(松平胖)씨의 장녀 요시꼬(ヨシ子)양과 혼약이 성립되어 드일에 어내허(御內許)를 어뒀다.

송평가는 귀족이 아님으로 광고진광(廣橋眞光) 백작의 가족의 형식을 밝기로 되었다. 그간 혼인준비를 마치고 정식칙허를 기다려 금추에 혼인식을 거행하게 되리라고 한다.¹¹⁰⁾

1926년 12월 공포된 「왕공가궤범」에서는 왕공족에 대한 결혼 대상자의 신

107) 『동아일보』, 1930년 10월 31일자.

108) 『동아일보』, 1931년 4월 17일자.

109) 松平佳子는 후에 廣橋 백작 가문의 양녀로 입적되게 되면서 그 씨명 또한 廣橋誠子로 개명하게 된다.

110) 『동아일보』, 1931년 7월 5일.

분을 한정해 두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제는 명목적으로 공족인 이건의 배우자로 화족 이상의 지위를 가진 인물을 배우자로 선정해야만 했다. 「왕공가계범」의 공포로 인해 왕공족이 황족이 아님은 분명해졌지만, 계범 속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왕공족은 여전히 일정부분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었다. 또한 왕공족은 황족보다는 하위에 있지만, 귀족인 화족보다도 상위에 위치하는 특권계층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건의 결혼 대상자가 평민 신분일 경우 조선 왕실 자체 내의 불만을 살 뿐만 아니라 일본 황실의 위신에도 금이 갈 우려가 있었다. 그리하여 평민 신분이었던 佳子를 화족의 신분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일제는 그녀를 廣橋 백작 가문의 양녀로 입적시키는 방법을 이용했던 것이다.

이처럼 왕공족에 대한 정략결혼 정책을 차례차례 진행시켜 왔던 일제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바로 이우가 일제의 정략결혼 정책에 반대하여 박영효의 서손녀딸 박찬주와의 결혼을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이왕직에서는 이러한 이우의 행동이 **‘왕공족의 婚嫁는 그 약속을 맺기 전에 칙허를 받아야 한다’**는 「왕공가계범」 119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본 결혼을 반대했다.¹¹¹⁾

이후 이우에 대한 일제의 감시는 나날이 심해졌다. 특히 1931년 12월 25일부터 1932년 1월 5일까지 이우가 휴가차 조선으로 귀환한 동안 창덕궁경찰서장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동정을 시간대별로 확인하여 경무국장과 경기도경찰부장에게 보고했다. 그들은 **‘공전하를 접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志賀 어용과 또는 末松 사무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공전하에 직접 알현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었다.¹¹²⁾ 무엇보다도 이우와 박찬주의 결혼문제와 관련하여 촉각을 곤두세우

111) 이기동, 『비극의 군인들』, 일조각, 1982, pp.236~238.

112) 昌警秘第4號, 소화7년 1월 5일, 창덕궁경찰서장→경무국장 및 경기도경찰부장

고 있었는데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우공전하 경성 체재 중에 御동정 등에 관한 건

이우공 전하께서는 예정대로 오늘 아침 10시 경성역을 떠나는 열차로 동경에서 따라 온 隨從員 및 全家 사무관 末松多美彦(부산항까지)을 데리고 동경으로 귀환하셨다. 경성에 체재 중이실 때 동정에 관해서는 이미 보고한 대로인데, 일상의 기거와 기타 동정은 다음과 같으므로 보고 드립니다.

(중략)

三. 이전에 보고 드렸던 후작 박영효의 손녀딸 박찬주와의 문제에 관해서 志賀 어용괘를 비롯하여 末松 사무관은 이미 알고 있고, 이해승 후작과 이달용 부인 및 貴人 김씨(故이우공전하의 첩) 등의 행동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兩人的 密會 및 기타에 관하여 추호도 빈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本月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 사이에 이강妃 전하 방문을 위해 성북동 별장에 왕복하시었으므로 銳意視察했던 바 해당 문제에 대해 밀의 등을 하신 形跡은 없다.¹¹³⁾

이처럼 당시 일제는 이우와 박찬주의 혼인을 무산시키기 위해 이우뿐만 아니라 그를 원조하고 있던 조선 왕실 내 인물들에 대한 감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1933년 12월 13일 언론을 통해 이우와 박찬주의 혼약이 내정된 사실이 보도되었고¹¹⁴⁾, 1935년 5월 3일 일본 동경에서 결혼식은 거행되었다.¹¹⁵⁾

113) 昌警秘第4號, 소화7년 1월 5일, 창덕궁경찰서장→경무국장 및 경기도경찰부장

114) 『동아일보』 및 『조선중앙일보』, 1933년 12월 13일.

115) 이기동은 그의 저서에서 이우와 박찬주의 결혼이 성사될 수 있었던 데에는 박영효의 공이 컸다고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박영효가 일본 동경으로 가서 일본정부 및 궁내성의 고관들과 줄기차게 협의한 끝에 동의를 얻어냈고 비로소 궁내성에서 이왕직에 본 결혼을 추진하도록 명령하게 되었다고 한다(이기동, 『앞의 책』, pp.239~240).

2. 관리조직의 운영

한일합병 이후 일제는 조선 왕실을 왕공족이라는 신분을 통해 그들의 체제 내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조선총독부와는 별도로 李王職이라는 감독기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¹¹⁶⁾ 조선총독부가 대한제국의 일반국정업무를 담당하던 의정부를 계승한 기관이라면, 이왕직은 대한제국 황실의 제반업무를 담당하던 궁내부를 계승한 기관이다. 즉, 합병 후 왕공가로 격하된 조선 왕실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던 기관인 것이다. 하지만 이왕직은 대한제국기의 궁내부와는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한다. 궁내부가 황실 권력을 상징하며 황제권을 옹호하는 중추기관이었다고 한다면, 이왕직은 형식적으로는 왕공족을 보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들이 분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제의 식민통치기관일 뿐이었다.

이처럼 일제시기 동안 조선 왕실의 家務를 담당했던 이왕직의 관리 하에 재일 왕공족도 포함되어 있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이왕직을 중심으로 일제가 재일 왕공족을 어떠한 조직체제 속에서 관리·감독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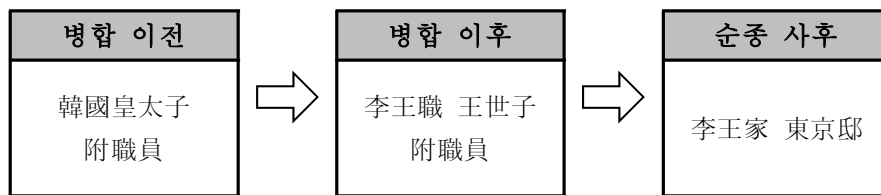
가. 在日 王家에 대한 관리

116) 이왕직의 직제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신명호, 「일제하 李王職과 李王家 족보」, 『한국학대학원 논문집』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96.

이윤상, 「일제하 '조선왕실'의 지위와 이왕직의 기능」, 『한국문화』4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먼저 재일 왕공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리대상이었던 영친왕 이은에 대해서 살펴보자. 1907년 도일한 이래, 일본 내에서 영친왕의 생활은 크게 3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해볼 수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영친왕의 지위 변화에 따른 시기구분이다.



<표4> 영친왕 도일 후 일본 내 관리기구의 변화

위의 그림에 나타나듯이, 在日 기간 동안 영친왕의 지위는 세 차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907년 12월 대한제국 황태자의 신분으로 처음 도일한 이래, 1910년 병합과 동시에 이왕가의 대를 이을 왕세자로 신분이 격하되었고, 1926년에는 순종의 죽음으로 이왕의 지위를 계승하여 이왕 이은으로서 생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지위가 바뀌에 따라, 영친왕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영친왕 이은이 이왕을 계승한 이후 이왕직 조직 체계의 변화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영친왕대의 이왕직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한다. 앞서 今村의 의견서에서 확인되듯이 일제는 순종의 죽음을 분기점으로 조선에서 대왕공가 정책의 완결을 꾀하였고, 이러한 의도가 그대로 이왕직 조직상에도 반영되었던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李王職의 이분화이다. 순종 죽음 직후 일부 여론에서도 보도하고 있듯이, 이왕 계승 후 영친왕의 常主 장소는 이왕가 축소화 문제와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¹¹⁷⁾ 즉, 영친왕이 경성에 상주할 것인지

117) 『조선급만주』 224호, 「李王家は縮小が當然である」, 1926년 7월.

아니면, 동경에 상주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였다.

당시 영친왕은 1923년 12월 육군대학을 졸업한 후 1924년 12월 20일자로 참모본부에 배속되어 있었다.¹¹⁸⁾ 그리고 1926년 4월 26일 순종의 죽음 후 동년 6월에 조선군사령부 배속을 겸무하게 되어 조선 내에서 근무한다. 하지만 1926년 6월 26일 동경행에 올라 동년 7월 28일 조선군사령부 겸무인 채로 참모본부원이 되어 이후 일본에 상주하게 된다. 순종 사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조선을 떠나 동경으로 향하게 된 셈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도 일제의 침략적 의도는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일제는 부모가 죽었을 때 三年喪을 치루는 조선 고유의 喪禮를 무시하고, 영친왕에게 일본 황족의 예를 따르게 했던 것이다. 보통 일본 황족의 관례에 의하면, 부모가 사망했을 지라도 五十日祭를 마치고 公務로 나가야 했다.¹¹⁹⁾ 일제는 이처럼 영친왕에게 일본 황족의 상례를 강요하면서 조선시대 이래 이어져 왔던 왕실의 전통성을 무시해버렸던 것이다.

이리하여 영친왕은 이왕의 지위를 계승한 이후에 조선 왕실의 자취가 남겨져 있는 경성에 있지 못하고, 왕세자 시절과 다름없이 일본 동경에서 거주한다. 결국 일제가 조선 왕공족의 대표자인 이왕의 동경 상주를 통해서 왕공족 도일정책의 완료를 실현했던 것이다. 이제 조선 경성에는 황량한 궁궐 속에 순종의 배우자였던 尹妃를 비롯한 왕공족의 미망인들만이 남아 있을 따름이었다.¹²⁰⁾ 즉, 조선 왕실의 후계자들을 모조리 일본 동경에 거주 시킴으로써, 왕공족과 조선민중들의 공간적 단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118) 이왕은전기간행회, 『앞의 책』, p.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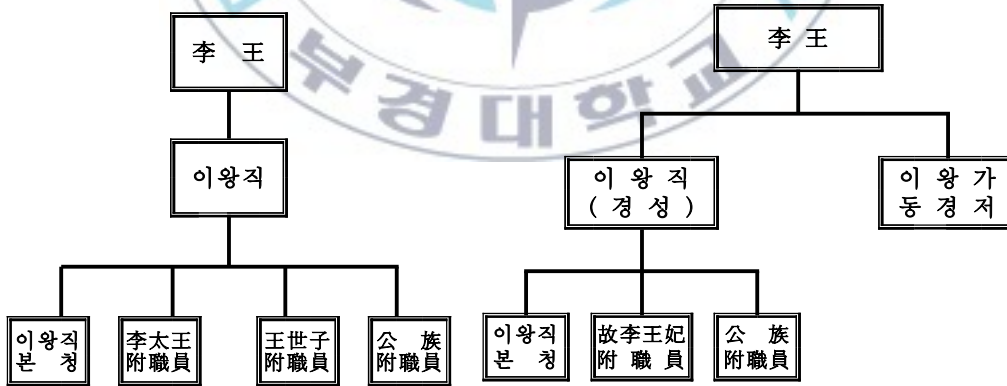
119) 『조선급만주』 224호, 「李王家は縮小が當然である」, 1926년 7월.

120) 물론 순종이 흥거하는 1926년을 전후하여 이강 공은 여전히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이강공은 국외탈출사건 등으로 인하여 조선총독부의 엄격한 감독 하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고 있었으며, 결국 1930년 6월 13일 隱居 당하여 公의 지위를 아들 이건에게 물려준다. 특히 은거 조치가 있기 전후하여, 관광이라는 명목 하에 일본으로 건너가 장기간 거주하게 된다(「경비관계철」李堉公妃兩殿下關係 소화4년-소화6년, 국가기록원 소장).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일본에 상주할 새로운 이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이왕직의 거취 문제와 직결된다. 조선 왕실의 가무를 담당하는 이왕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리대상은 이왕이다. 따라서 그 최우선 인물인 이왕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당연히 이왕직의 소재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다. 즉, 이왕 이은이 있는 동경으로의 이왕직 이전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앞서 今村이 순종 사후의 대비책 중 첫 번째로 이왕직의 동경 이전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은 今村의 제안과는 반대로 이루어졌다. 즉, 기존의 경성 소재 이왕직은 그대로 두는 대신에 영친왕의 도리이사카[鳥居坂] 御用邸 内に 출장소 격인 사무소를 두어 일본 내 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었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¹²¹⁾



<표9> 순종대의 이왕직

<표10> 영친왕대의 이왕직

121) 李大王附職員은 1919년 고종이 붕어함에 따라 소멸된다(『조선총독부관보』2299호, 1920년 4월 13일). 王世子附職員은 1926년 순종의 붕어와 동시에 영친왕이 이왕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서 소멸되고, 그 자리에 故李王妃였던 尹妃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故李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 이왕직의 기능은 이분화된다. 순종代에는 이왕이 창덕궁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왕직 관사는 宮內에 있으면서 조선 내 왕공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와 순종에 관한 서무 및 신변에 관한 일을 통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체제가 영친왕代에 와서 변화를 맞이한 것이다. 경성 내의 이왕직은 조선 내 왕공족, 특히 尹妃에 관한 업무 및 재산관리, 陵 업무, 제사, 주전 등에 관한 일을 기존과 같이 담당했다. 하지만 이왕에 관한 업무만은 일본의 ‘李王家 東京底’ 내에 설치된 사무소로 모두 이관되었던 것이다.

직명	이름	東京 在勤	직명	이름	東京 在勤
長官	韓昌洙		典祀	高喆	
次官	篠田治策		상동	林光勛	
事務官 (예식과장)	李恒九		상동	李載榮	
상동 (서무과장)	末松熊彦		典醫	高階虎治郎	○
상동 (주전과장)	朴胄彬		技師	下郡山誠一	
상동 (회계과장)	佐藤明道		通譯官	宮島敏雄	
상동	林健太郎	○	雅樂師長	金寧濟	
상동	李謙聖	○	御用掛	池部義雄	
典祀	李聖默		御用掛	中川糸	○
상동	劉海鍾		御用掛	岡本陽七	○
상동	山本登喜太郎		X		

<표7> 이왕직 본청 소속 직원(1930년 1월 1일 현재)

王妃附職員이 신설된다(「조선총독부관보」4148호, 1926년 6월 18일).

이왕가 동경저 사무소의 업무는 이왕직 본청과 궁내성에서 차출된 인원이 파견되어 처리했다. 특히 이왕직 장관의 경우에는 1년 중 3분의 1은 동경에서 지내고 있었고 영친왕의 용무에 따라서 동경과 경성 사이의 왕복이 잦았다고 한다.¹²²⁾ 1930년 1월 1일 당시 이왕직 본청에 소속되어 있던 21명 중 총 5명이 이왕가 동경저로 파견되었다. 事務官 2명, 典醫 1명, 御用掛 2명 등이다.¹²³⁾ 이를 도표화하면 <표7>과 같다.

두 번째는 이왕직 조직의 축소화이다. 당시 조선총독부 내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도 순종 사후 조선 왕실에 대한 축소화 문제는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그 관리 기구인 이왕직의 축소화로 연결되었다. 釋尾東邦¹²⁴⁾은 그의 사설에서 조선민중들이 문명국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 이왕가가 180만원의 歲費를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¹²⁵⁾ 특히 본래 세비의 사용처였던 이태왕, 이왕, 왕세자 등 3인 중에 이태왕과 이왕이 흉거한 상황 속에서 남겨진 이왕 李垠에게 180만원의 세비를 모두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이왕가 스스로 이를 반감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뒤이어 그는 또한 지나치게 비대한 이왕직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금일과 같이 대규모의 이왕직 등은 전혀 쓸모없는 기관[長物]이다. 전부 철

122) 『조선금만주』314호, 1934년 1월.

123) 『職員錄』, 1930년 1월 1일.

124) 본명은 釋尾春莠이다. 호는 旭邦 또는 東邦이다. 그는 1900년 내한 이후 교사와 민단 활동, 어용언론인으로 40여년 동안 활동하면서 민간인의 입장에서 조선침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한 인물이다. 이에 관해서는 최혜주, 「한말 일제하 샤쿠오(釋尾旭邦)의 내한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4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를 참고하기 바란다.

125) 한일합병 당시 일제가 조선 왕실에 부여한 세비는 150만원이었다. 이러던 것이 물가 상승으로 말미암아 1921년 30만원이 증액되어 180만원이 되었다(齋藤子爵記念會, 『子爵 齋藤實傳』2, 齋藤子爵記念會, 1941, pp.755~756).

폐하여 일본의 각 皇族家와 같이 事務官 1명, 屬 몇 명, 雇員 몇 명으로 해야 할 것이다. 內宮 쪽도 200명에 가까운 女官 및 宮人을 크게 도태하여 십수명 쯤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일본의 각 황족가에도 조화를 이루고, 조선 民度에 대해서도 조화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하략)¹²⁶⁾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26년 순종 사후 이왕직 직제는 큰 변화를 맞이한다. 바로 贊侍와 掌侍司의 폐지가 그것이다. 찬시는 합병 이후 왕공족 중에서도 왕족인 이왕과 이태왕 및 왕세자에게만 近從하며 身側의 일을 담당하는 職員으로, 대한제국 시기 궁내부 내 侍從의 기능을 계승한 관리였다. 관직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찬시는 왕가의 최측근으로서 공식적·비공식적 자리를 막론하고 왕족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 보필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만큼 宮內에서의 영향력도 대단했다. 예컨대 대한제국 시기의 궁내부 시종원경과 합병 이후 이왕직 장시사장을 모두 역임한 尹德榮은 왕실의 외척으로, 그가 왕실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했다. 때문에 조선총독부에서도 1917년 순종의 東京 방문 등 식민통치상 중요한 사업들을 그를 이용하여 성사시키고 있었다.¹²⁷⁾ 장시사는 이러한 찬시 및 전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이왕직의 산하 기구였다. 「이왕직관제」에서 해당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⁸⁾

제14조 이왕직에 掌侍司를 두고, 贊侍 5인, 典醫 2인, 屬 및 典醫補를 분속 시킨다.

장시사에 장시사장을 둔다. 장시사의 찬시로서 이에 충원한다.

장시사장은 상관의 명을 받들어 이왕의 身側 및 그 典醫에 관한

126) 『조선급만주』224호, 1926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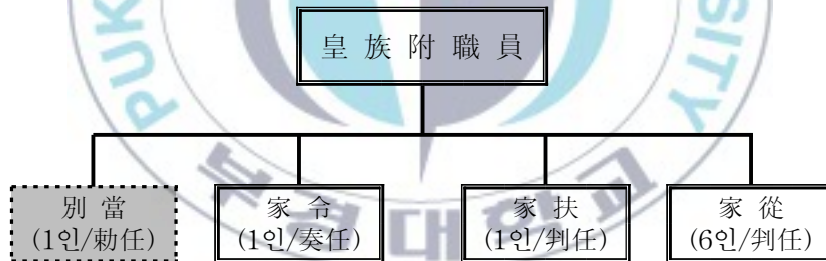
127) 곤도시로스케, 『앞의 책』, pp.168~185.

128) 『조선총독부관보』1153호, 1916년 6월 8일.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이태왕에게는 사무관 3인, 찬시 4인, 전의 2인, 속 및 전의보를, 왕세자에게는 사무관, 찬시, 전의 각 1인, 속 및 전의보를, 공족에게는 사무관 각 1인 및 속을 분속시킨다.

찬시와 장시사의 폐지는 일제의 대왕공가 정책상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조선 왕실에 대한 기존 우대정책 중에서 중요한 특권을 회수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황실에서도 侍從이라는 관직이 설치된 기관은 천황을 모시는 侍從職과 황태자를 모시는 東宮職 등 2개 관서 뿐이다.¹²⁹⁾ 즉, 일본 황실에 있어서 최고 정점이 되는 천황과 다음대에 천황에 오를 황태자만이 이 侍從을 거느릴 수 있었던 것이다. 직제상 일반 황족들에게도 家務를 담당할 사무관들만이 배정되어 있고, 시종의 일을 담당하는 관리는 전무하다.



<표8> 일본 궁내성의 皇族附職員

위의 조직도에서 알 수 있듯이, 宮號를 하사받은 황족에게는 家令, 家夫, 家從 등의 직원이 부여되었다. 가령은 소속 황족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이하 가부와 가종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가부는 가령을 보좌하는 역할이며, 가종은 庶務의 일에 종사하는 관리였다. 다만 궁호를 하사받은

129) 『職員錄』, 明治四十一年 甲.

親王일 경우에는 특별히 別當을 부속시키게 되어 있었지만, 別當은 소속친왕을 보좌[輔翼]하고 가령 이하의 직원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시종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¹³⁰⁾ 이처럼 일제는 일본 황족들에게도 부여되지 않았던 시종, 즉 찬사라는 직원을 왕족에게만 특별히 허용하는 우대 정책을 펼침으로써 조선 왕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그들의 식민통치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왕직 본청 조직								
1911.02.01 ¹³¹⁾	서무계	회계계	장시계	장사계	장원계			
1913.07.24 ¹³²⁾	서무계	회계계	장시계		장원계			
1915.03.24 ¹³³⁾	서무과	회계과	장시사	제사과	장원과	주전과	농사과	
1916.06.09 ¹³⁴⁾	서무과	회계과	장시사	제사과	장원과	주전과	농사과	의식과
1918.06.15 ¹³⁵⁾	서무과	회계과	장시사	제사과	장원과	영선과		의식과
1920.10.30 ¹³⁶⁾	서무과	회계과	장시사					예식과
1928.08.14	※ 장시사 폐지							
1934년 ¹³⁷⁾	서무과	회계과				주전과		예식과
1942년 ¹³⁸⁾	서무과	회계과			산림과	주전과		예식과

<표9> 일제시기 이왕직 본청 조직의 변화 과정¹³⁹⁾

130) 『皇族附職員官制』, 명치40년 11월, 황실령 제7호.

131) 『이왕직직원록』, 1911년 9월 1일 현재.

132) 『이왕직직원록』, 1914년 7월 1일 현재.

133) 『이왕직직원록』, 1915년 4월 1일 현재.

134) 『이왕직직원록』, 1918년 8월 1일 현재.

135) 『이왕직직원록』, 1918년 8월 1일 현재.

136) 『순종실록』부록 권11, 1920년 10월 30일.

137) 『조선연감』소화9년도, 경성일보사·매일신보사, 1933.

138) 『조선연감』소화17년도, 경성일보사, 1941.

그런데 이러한 찬시 제도가 순종의 죽음과 함께 폐지된 것이다. 1928년 8월 14일 황실령 제4호로 반포된 「이왕직 관제 중 개정의 건」에서 결국 찬시와 장시사는 삭제되었다.¹⁴⁰⁾ 찬시 제도의 축소는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었다. 1916년 당시 이왕직 내에 찬시는 총 10명이었다.¹⁴¹⁾ 이 중 5명은 이왕직 장시사 소속으로 이왕인 순종을, 4명은 李太王附職員 소속으로 이태왕인 고종을, 마지막 1명은 王世子附職員 소속으로 왕세자인 영친왕을 각각 근시했다. 이러던 것이 고종의 붕어 후 그에 소속되어 있던 찬시 4명이 관제상 삭제되어 찬시는 총 6명으로 축소되었다.¹⁴²⁾ 그리고 순종의 붕어로 영친왕이 이왕을 계승함에 따라 왕세자부직원 소속이었던 찬시 1명이 이왕직 장시사 소속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이왕인 영친왕을 근시하는 찬시는 총 6명이 되었다.¹⁴³⁾ 그런데 약 2개월 후인 1928년 8월 14일 찬시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고 말았던 것이다.

찬시 제도의 폐지에 따라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인물은 분명 영친왕이었다. 가장 가까이에서 수족과 같이 부릴 수 있는 찬시의 부재는 동경에서 생활하는 영친왕을 더욱더 고립시켰을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그 시점이 영친왕이 이왕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때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영친왕은 순종의 小祥을 끝마치고 1927년 5월 유럽 순방을 떠나 1928년 4월 귀국한다. 즉, 영친왕이 귀국한 이후 실질적으로 이왕의 지위를

139) 1911년부터 1928년까지 이왕직 본청 조직의 변천과정은 『이왕직직원록』과 『조선총독부관보』, 『순종실록부록』 등에 기록되어 있는 ‘李王職事務分掌規程’을 통해서 그 변화 시점 및 내용 등을 간취해낼 수 있다. 그러나 1928년 이후부터는 이 분장규정의 변화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본 조직도에서 1934년부터 1942년까지 기재한 내용은 당시 『조선연감』의 내용을 근거로 기재한 것이다.

140) 『조선총독부관보』495호, 1928년 8월 21일.

141) 『조선총독부관보』1153호, 1916년 6월 8일.

142) 『조선총독부관보』2299호, 1920년 4월 13일.

143) 『조선총독부관보』4148호, 1926년 6월 18일.

가지고 공무에 나아가는 시점에 찬시 제도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일제의 계획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왕직 사무관이었던 權藤은 찬시의 폐지가 시행되기 전인 1926년에 쓴 자신의 글에서 장시사장 관직이 이미 유명무실화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상략) 이제부터는 이왕직도 새로운 교육과 환경 속에서 성인이 되신 垠 전하의 치세가 되었으니, 다년간 이어져 온 인습의 고리도 끊어야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그 조직과 인사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측근에서 모시는 사람에 있어서도 高義敬¹⁴⁴⁾ 백작이 물러나고 閔泳綺 남작이 이를 겸직하여 掌侍司長이라는 관직을 有名無實하게 만든 것이 그 시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대의 변천과 이왕가의 사정으로 볼 때 당연한 귀결이다. 이번 개혁에 민 남작의 원숙한 수완이 어느 정도까지 발휘될지 자못 지켜볼 만하다.¹⁴⁵⁾

여기에서 권등은 영친왕의 최측근이었던 고희경이 물러나고 당시 이왕직 장관이었던 민영기가 이를 대신하게 되면서 장시사장 직책이 유명무실해졌으며, 이것이 이후 이왕직 개혁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희경은 대한제국 시기 궁내부 내 東宮의 大夫를 역임한 인물로, 영친왕이 황태자의 신분으로 일본 유학행에 오른 이후 그가 이왕의 지위에 오를 때까지 약 20년 동안 최측근에서 보좌한 사람이다. 때문에 영친왕이 이왕의 지위에 오를 경우 장시사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분명 고희경이었다. 그런데 일제는 이왕직을 쇄신한다는 명분 아래 고희경을 퇴진시킴과 동시에 장시사장이란 직책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실제로 고희경은 1926년에 이왕직에서 물러나와 중추원고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144) 원문에서는 高義敬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고희경의 오기로 판단된다.

145) 權藤四郎介, 『앞의 책』, pp.257~258.

다.¹⁴⁶⁾ 요컨대, 일제는 이미 순종 사후 고희경의 퇴진 등을 계기로 장시사 및 찬시의 기능을 크게 축소시키고 있었고, 1928년 「이왕직 관제」의 개정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폐지시켜 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찬시의 폐지 이후 얼마 되지 않아 「王公族附陸軍武官官制」라는 관제가 제정된다는 사실이다. 이 관제는 1928년 9월 14일에 勅令으로 공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王公族附陸軍武官官制

제1조 육군무관인 王에게는 王公族附陸軍武官을 배속하고 각 병과 佐尉官으로써 이에 임명한다.

무관이 아닌 公에게는 특별히 왕공족부육군무관을 배속할 수 있다.

제2조 왕공족부육군무관은 그 부속하는 왕공족의 威儀, 整飾을 奉助하고 行軍, 觀兵, 演習 기타의 軍務 그리고 祭儀, 禮典, 宴會 등에 陪從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3조 왕공족부육군무관은 제의, 예전, 연회 등의 사항에 관해서는 궁내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附則

본령은 소화3년 9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물론 왕공족에게 무관을 부속시키는 제도가 이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합병 초기에 육군대신의 上奏를 천황이 裁可하는 형태로 「왕족 공족에 무관을 부속하는 건」이 공포되었다.¹⁴⁷⁾

○ 王族公族에 무관을 부속하는 건(※명치43년 12월 13일 육군대신이 상주하여 재가를 거침)

146) 權藤四郎介, 『앞의 책』, pp.287~289.

147) 宮內省, 『宮內官制及附屬法規』, 日本宮內省, 1914, p.293.

李王, 王世子 및 李垺公, 李熹公에게는 그 威儀, 整飾을 奉助하기 위해 皇族에 準하여 다음과 같이 王公附武官을 부속시킨다.

王附	長官	一	領尉官	三
王世子附	領尉官	二		
公附	領尉官	一		

그리고 이듬해인 1911년 2월 1일 「이왕직관제」가 최초로 시행되면서, 이 왕과 왕세자 및 각 공에게 전속무관이 배속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軍令(148)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內閣總理大臣이 副署하는 勅令을 거쳐 정식 관제로 제정된 것은 아니었다. 즉, 왕공족 내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거듭 천황의 재가를 거쳐 새로운 軍令으로서 개정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이는 「왕족공족에 무관을 부속하는 건」의 내용 자체가 지위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예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예컨대, 公家の 한 축을 담당했던 李熹가 사망한 후 李垺이 그 지위를 계승했을 때, 이준에 대해 무관을 부속시키는 건이 육군대신에 의해 상주되었고 천황의 재가를 거쳐 軍令으로 공포되었다.¹⁴⁹⁾

이처럼 왕공족에 대한 附무관의 배속이 정식관제로 공포되지 못한 데에

148) 軍令은 육해군의 統帥에 관하여 勅定을 거친 규정을 말한다. 즉 육해군대신이 의회의 協贊 또는 閣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주하여 재가를 받는 것이다. 그 적용을 받는 것은 군대 및 현재 군의 구성분자인 군인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戰時 또는 事變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다. 軍令은 반드시 공포를 필요치 않는다. 특별히 필요할 경우만은 천황이 上諭를 붙이고 친히 서명한 후[親署], 어새를 찍고 主任인 육해군대신이 副署하여 관보를 통해 공시된다. 그리고 軍令은 별도로 시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일 시행된다.(井原頼明, 『皇室事典』, 富山房, 1938, pp.58~59.)

149) 「李垺公附武官附屬の件」은 1912년 11월 천황의 재가를 얻는다. 그 상주 내용을 살펴 보면, ‘李垺公이 李熹公의 榮錫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故이희공의 예에 準하여 그 위와 정식을 奉조하기 위해 皇族에 準하여 公附武官으로 領尉官 1명을 附속시키고자 하옵니다.’(『大日記甲輯』, 大正9年, 「李王, 王世子及李垺公附武官に關する件」 <http://www.jacar.go.jp/>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는 왕공족에 대한 개념규정이 확실히 성립되지 않았던 당시 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왕공족의 신분 및 班位, 범위, 계승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대우 규정을 정식 관제로 제정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이는 「왕공가례범」이 공포되어 왕공족에 대한 기준법이 성립된 이후 「王公族附陸軍武官官制」가 칙령으로 공포되는 모습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당시 일본 육군성 내 軍事果에서 작성한 ‘참모총장에게 보내는 照會案’에 포함된 본 관제에 대한 理由書는 이러한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다.

理由書

종래 이왕, 왕세자 및 공에 대해서는 특별히 윤재를 거쳐 그 위의, 정식을 봉조하기 위해 육군무관을 부속시켰지만, 대정15(1926)년 12월 1일 왕공가례범이 제정되어 李家가 따라야 할 軌儀를 정하였기 때문에 皇族附陸軍武官에 준하여 새로운 관제를 설립할 필요가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¹⁵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정된 「王公族附陸軍武官官制」에서 왕공족부무관은 그 임무범위가 이전에 비하여 확대된다. ‘위엄 있고 정돈된 모습을 받들어 돕는다’는 다소 의례적인 내용에, 行軍, 觀兵, 演習 기타의 軍務 그리고 祭儀, 禮典, 宴會 등에 陪從하는 임무가 정식으로 추가된 것이다. 왕공족이 참여해야 할 거의 모든 공식적인 행사에 附무관의 陪從이 허락되었다. 이는 「왕공가례범」 공포 이후 왕공족이 의무적으로 육군 또는 해군 무관으로 임관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았을 때¹⁵¹⁾, 附무관들이 찬시의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제국의 군인으로서 평생을 병영 안에서 생활해야 할 왕공족, 특히 왕족에게 있어

150) 『大日記甲輯』, 昭和3年, 「王公族附陸軍武官官制定の件」(<http://www.jacar.go.jp/>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51) 『왕공가례범』 제59조에 의하면, 王과 王世子, 王世孫, 公은 만 18세가 된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 또는 해군 무관에 임관해야 한다.

서 附무관은 바로 이전의 찬사와 유사한 존재였던 것이다.

요컨대, 일제는 왕족에게 특별한 대우였던 찬사를 폐지하고, 정식관제로써 일본 황족의 예에 준하여 왕공족부육군무관을 부속시켰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찬사의 폐지는 조선 왕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중대한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왕족의 수족과도 다름없는 찬사를 없앤 것은 그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려는 일제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왕공족에 부여되었던 특권을 회수하고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일본 황실의 관례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재일 왕공족의 일본 사회로의 흡수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나. 在日 公家에 대한 관리

합병 당시 공의 지위를 부여받았던 이희와 이강은 조선 경성에서 각각의 公家를 이루며 생활했다. 그리고 이들에 관한 기본적인 관리 또한 王家와 마찬가지로 ‘왕족 및 공족의 가무를 담당하는’ 이왕직에서 이루어졌다. 「이왕직관제」 및 「이왕직사무분장규정」을 살펴보면, 이왕직 직원 내에 公族附職員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²⁾ 이들의 임무는 각 공족 가문의 서무와 회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최초에는 공가당 事務官 2명과 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사무관과 속은 당시 公邸 내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공가 업무를 수행했다. 물론 공가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관에는 항상 일본인이 배정되고 있었다. 당시 이희의 공저는 경성 中部 校洞에 위치한 운현궁이었고, 이강의 공저는 경성 중부 寺洞에 있었던 사동궁이었다. 이 두 공저는 공위가 계승될 때마다 다음 대의 공에게 이양되면

152) 『이왕직직원록』, 1911년 9월.

서 일제 시대 동안 조선 내 공가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일본의 왕공족 도일정책에 따라 유학행에 오른 이건과 이우 가운데 먼저 공위를 계승한 인물은 이우였다. 이우는 이희의 뒤를 이어 공위를 계승한 이준이 사망한 후 1917년 운현궁에 양자로 들어가 공의 지위에 오른다. 하지만 그는 당시 6살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재산관리 및 보육에 관한 후견인으로 이준공비와 이왕직 장관이 선정되어 이우를 대신해 가무를 주관하게 되었다.¹⁵³⁾ 이러한 상태는 「왕공가궤범」의 공포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궤범에서는 ‘왕, 왕비, 태왕, 태왕비, 왕세자, 왕세자비, 왕세손, 왕세손비 및 왕, 태왕, 왕세자, 왕세손의 자식으로 아직 婚嫁하지 못한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왕직장관으로써 그 당사자로 간주한다. 단, 이왕직장관은 所部の 관리로 하여금 대리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⁵⁴⁾ 즉, 「왕공가궤범」이 공포되는 1926년 당시 이우는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가 사무는 여전히 이왕직 장관의 결정으로 처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이우가 직접 가무를 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만 20세가 되는 1932년부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날 당시부터 이미 공의 지위에 있었던 이우와는 달리 이건은 유학 이후 임의적으로 ‘公子’라는 칭호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러한 그가 정식 왕공족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왕공가궤범」이 공포되고 난 이후였다. 그리고 1930년 6월 12일 부친인 이강이 隱居하는 형태로 公位를 세습 받아 사동궁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¹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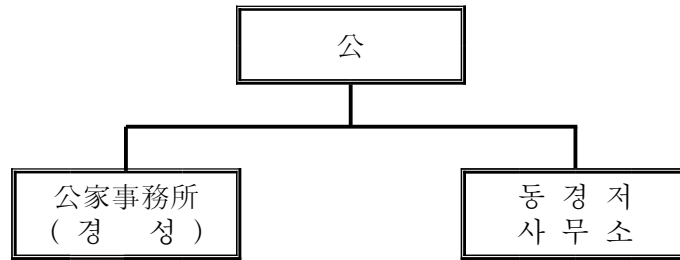
하지만 이건과 이우는 조선 내에 있는 사동궁과 운현궁에서 그들의 공가를 이끌어가지 못한다. 일제의 왕공족 도일 정책에 따라 일본 동경에 거주

153) 『순종실록』부록 권8, 1917년 8월 4일.

154) 『왕공가궤범』 제82조.

155) 『조선총독부관보』 1037호, 1930년 6월 19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의 거주지가 동경으로 바뀔에 따라 그를 관리하는 공가 사무소의 조직도 변화를 맞이했다.



<표10> 이견·이우代의 공가 사무소 조직

위의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기존의 공가 사무소의 역할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바로 조선의 공가 사무소와 일본의 동경저 사무소로 그 조직이 이분화된 것이다. 이는 앞서 영친왕이 이왕을 계승한 후 이왕직이 변화하는 양상과도 유사하다. 경성에 위치한 공가 사무소는 조선 내에 거주하는 공족의 관리, 공가에 대한 일반 서무 및 조선 내에 있는 공가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견과 이우가 실제 거주하는 동경저에도 별도의 사무소가 신설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일본 내 공족의 활동 및 동경저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공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916년부터 정원이 1명으로 줄어든 사무관이 조선과 일본을 왕래하며 업무를 처리했다.

그런데 이처럼 이견과 이우가 명목적으로는 공가의 수장으로 가무를 관장해야 했지만, 이들이 공가 행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미미했다. 물론 영친왕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제 왕가 및 공가 행정은 대부분 이왕직과 이를 감독하는 조선총독부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례가 바로 이견 공가 소유의

어장에 대한 분구의 해결과정이다.

경남 통영에 위치한 이건 공가 소유의 어장은 일제시대 조선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어장이었는데, 이강代부터 香椎源太郎에게 어장 72區를 전부 대여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료가 年額 15,000원이라는 소액이었고, 1920년 계약이 갱신되었을 때는 이마저도 2,500원이 감소하면서 대부료가 12,500원으로 떨어졌다.¹⁵⁶⁾ 이는 당시 대부기간이 종료되면서 향추가 28개소만을 계속 경영하고 43개소는 이강 공가에 반환하는 형식으로 계약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¹⁵⁷⁾ 당시 조선총독부의 西村 식산국장은 이 계약을 두고 **‘극히 공정히 분할하여 반환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향추가 차지한 28개소는 우수한 어장인데 반해 공가에 반환된 43개소는 漁利가 빈약함이 이후에 밝혀지면서 불평등한 계약임이 드러났다.¹⁵⁸⁾ 당시 통영 어장을 통해 향추가 벌어들이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었다는 소문을 감안해 볼 때, 그동안 공가가 재정적으로 입은 타격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때문에 이건 공가 사무소에서는 1930년 5월 1일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을 계기로 공가의 기본 재산을 적어도 100만원 가량으로 증식하기 위해 통영 어장의 매각을 결정한다. 그리하여 연고권자인 향추와 우선협상을 벌였지만 향추의 미온적 태도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동경에서 이를 보고받은 이건은 향추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일반입찰에 부칠 것을 공가 사무소에 명령했다.¹⁵⁹⁾ 이에 1930년 8월 2일 공가 사무소는 향추의 어장과 더불어 기타 어장을 합하여 총 38구의 어장에 대하여 指名入札에 따라 양도할 것을 결정하고¹⁶⁰⁾,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각 府郡面으로 입찰서류를 송

156) 『삼천리』제11호, 1931년 1월 1일.

157) 경남 통영의 이건 공가 소유 어장 72區 중 1개소는 海底電線敷設 관계로 취소되었다고 한다.

158) 『동아일보』, 1930년 9월 10일.

159) 『동아일보』, 1930년 9월 10일.

160) 『남선일보』, 1930년 9월 4일.

부했다.¹⁶¹⁾

그런데 이를 안 향추는 곧 방해공작에 나선다. 향추는 당시 慶南知事와 협력했는데, 지사는 관할 부군면에 명령하여 공가로부터 배부된 입찰관계 서류의 취급을 중지시켰다. 또한 조선총독부를 매개로 공가가 일반입찰을 취소하고 자신과 재계약하도록 압박하는 책략을 폈다. 이에 공가 사무소의 池尻萬壽夫 사무관과 當공가의 고문이었던 육군소장 前田昇은 사건의 위험성을 이견에게 알리기 위해 동년 8월 31일 동경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 때 이왕직으로부터 동경저 사무소로 향추와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급보가 날아들었던 것이다. 당시 언론에 따르면, '30일 오후 정무총감 응접실에서 松村 식산국장, 篠田 이왕직차관, 谷 경남지사, 西岡 수산과장, 향추 등이 회합하여 최후적 협의를 한 결과 쌍방의 양보로 향추氏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었다.'라고 계약 체결 상황이 기재되어 있다.¹⁶²⁾ 즉, 당시 공가의 최고 결재권자와 그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부재한 가운데 조선총독부 고위관료와 향추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930년 9월 2일 이견 공가사무소에서 발표한 「李公家漁場處分聲明書」의 말미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어장 계약과 관련된 제반 내용들이 權裁者인 이견의 直裁로 최종 결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¹⁶³⁾

당시 계약체결의 내용은 10개년 年賦償還總額 5십2만8천원에 무이자로 어장 12區를 향추에게 양여한다는 것이었다.¹⁶⁴⁾ 즉, 일시금이 아니라 1년당 5만2천8백원을 10년 동안만 지불하면 12구의 어장은 향추의 소유로 전환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통영 어장을 통해 일시금으로 100만원의 기본채산을 조성하고자 했던 공가 사무소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음을 의미

161) 『삼천리』제11호, 1931년 1월 1일.

162) 『동아일보』, 1930년 9월 2일.

163) 『남선일보』, 1930년 9월 4일.

164) 『동아일보』, 1930년 9월 17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향추와의 불평등 계약의 여파는 나머지 26구에 대한 계약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바로 어장 26구에 대한 계약자들이 자신들도 향추와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고 공가 사무소와 조선총독부에 진정한 것이다. 그 결과 절충안으로 일시금이 아니라 5개년 연부상환총액 27만원에 6분이자로 최종 결정되었다.¹⁶⁵⁾

요컨대, 이건 공가와 향추 사이에 체결된 어장 계약은 주권자인 이건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불평등한 계약이었다. 당시 이건은 공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정 분야에 있어서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조선총독부의 결정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수동적 입장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165) 『동아일보』, 1930년 11월 2일.

IV. 결론

이상에서 일제가 조선 왕실을 어떻게 해체시켜나갔는지를 ‘재일 왕공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제의 대왕공가 정책의 요체는 조선 민중들의 마음속에서 조선 왕실을 삭제시키는 데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제는 그들의 식민통치에 대해 조선 민중들의 심적 동의를 이끌어내고자 했고, 이를 위해 필연적으로 조선 왕실이 민중들에게 미치는 심적 지배력은 철저히 해체시켜야 했다.

이러한 목적 아래 일제는 기왕에 조선 민중들과 강력한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고·순종은 예외로 하더라도, 그들의 사후 조선 왕실을 이끌게 될 후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관리정책을 통해 조선민중들과의 완전한 분리를 꾀했다. 그 체현이 바로 조선 왕실의 후계자, 즉 왕공족에 대한 도일 정책이었다. 1907년 12월 황태자 신분이었던 이은의 일본 유학행은 그러한 정책의 첫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제는 후일 순종의 계승자가 될 영친왕 이은을 자신들의 철저한 관리 하에 둬으로써 조선 식민정책에 방해가 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요 식민 이데올로기였던 ‘문명개화’의 표상으로서 영친왕 이은을 이미지화해 나갔다.

한일합병 이후 진행되었던 일제의 대왕공가 정책을 살펴보면, 이러한 그들의 의도는 더욱더 여실히 드러난다. 일제는 우대 정책과 고립화 정책을 통해 끊임없이 조선 왕실의 약체화를 실현해나갔다. 그리고 이에 따라 조선 왕실의 권위와 상징성은 점점 실추되었다. 조선 왕실을 상대로 소송사건이 벌어지는 한편 심지어 영친왕 이은에 위해를 가하려는 사건 등의 발생은 조선 왕실이 민중들에게 미쳤던 심적 지배력의 상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조선총독부가 판단하기에도 ‘이화의 색채가 점점 쇠퇴할 것은 필연의 도리’였다.

하지만 조선 민중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고종과 순종이 살아있는 한 조선 왕실의 약체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고·순종의 사후 식민지 조선에서 대왕공가 정책을 완결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실행해나간다. 바로 앞서 영친왕 이은처럼 조선 왕실의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날 이건, 이우, 덕혜옹주 등을 모조리 일본으로 유학시킴으로써 공간적으로 왕실과 조선 민중들의 완전한 단절을 꾀한 것이다. 결국 순종 사후 李王의 지위를 계승한 영친왕 이은 또한 조선 왕실의 상징물인 창덕궁에 기거하지 못하고 왕세자 시절과 마찬가지로 동경에 상주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는 조선 왕실을 약체화시킨 후 중국에 가서는 조선 내에서 그들의 흔적 자체를 해체하고자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조선 왕실의 후계자들을 ‘재일 왕공족’으로 탈바꿈시켰다. 하지만 재일 왕공족에게서 조선 왕실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이동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재일 왕공족을 일본 사회 내로 자연스럽게 흡수시켜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느끼기에도 자신이 조선 왕족이었음을 망각해버릴 때 비로소 일제의 대왕공가 정책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일제는 이들을 어떻게 일본 사회 내로 흡수시킬 것인가라는 난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했던 전제조건은 ‘왕공족’이라는 신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에 있었다. 즉, 왕공족은 누구이며, 이들이 일본 사회 속에서 차지하게 될 법적 지위를 어느 정도로 위치지울 것인가에 대해 확정해야 했던 것이다. 이는 당시까지 지속되고 있던 왕공족이라는 신분이 가지는 모호성이 이제는 해결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순종 사후 영친왕 이은이 이왕을 계승한 그 해

에 공포되었던 「왕공가궐범」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통해 재일 왕공족은 일본 황족 다음의 반위에 위치하며 천황이 통치하는 제국 내의 충실한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 받았다.

「왕공가궐범」의 제정과 더불어 조선 왕실의 후계자들을 자연스럽게 일본 체제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선택된 방법은 정략결혼이었다. 영친왕 이은과 황족 방자비의 결혼을 시작으로 덕혜옹주와 이건 등은 차례로 일본 황족 가문과 혼인을 맺는다. 이우만이 일제의 극심한 감시 속에서 조선인과 결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재일 왕공족의 정략결혼은 ‘일선융화’라는 논리 아래 정당화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침략적 요소가 다분히 존재한다. 일제는 이 정략결혼을 통해 조선 왕실이 가지는 귀중성을 해체시키는 한편, 재일 왕공족의 일본 거주를 고착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에 정착하게 된 재일 왕공족은 기본적으로 이왕직의 관리 하에 있었다. 먼저 王家에 대한 관리를 살펴보면, 영친왕대의 이왕직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한다. 일제는 순종의 죽음을 분기점으로 조선 내 대왕공가 정책의 완결을 꾀하였고, 이러한 의도가 그대로 이왕직 조직상에도 반영되었던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李王職의 이분화이다. 앞서 주시하였듯이, 영친왕은 이왕의 지위를 계승한 이후에 대한 제국 황실의 자취가 남겨져 있는 경성에 있지 못하고, 왕세자 시절과 다름 없이 일본 동경에서 거주한다. 결국 일제가 왕공족의 상징인 이왕의 동경 상주를 통해서 왕공족 도일정책의 완료를 실현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왕직 기구도 이분화된다. 기존의 경성 소재 이왕직은 그대로 두는 대신에 이은의 鳥居坂 御用邸 内に 출장소 격인 사무소를 두어 일본 내 이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었다.

두 번째로는 이왕직의 축소화를 들 수 있다. 1926년 순종 사후 이왕직

직제는 큰 변화를 맞이한다. 바로 贊侍와 掌侍司의 폐지가 그것이다. 찬시는 합병 이후 왕공족 중에서도 고종과 순종 및 영친왕 등 왕족에게만 近從하며 身側의 일을 담당했던 職員으로, 대한제국 시기 궁내부 내 侍從의 기능을 계승한 관리였다. 그런데 이러한 찬시 제도가 순종의 붕어 후 영친왕이 이왕을 계승하는 시점에서 폐지된 것이다. 이는 일제의 대왕공가 정책 상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조선 왕실에 대한 기존 우대정책 중에서 중요한 특권을 회수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황실에서도 찬시에 해당하는 侍從이라는 관직이 설치된 기관은 천황을 모시는 侍從職과 황태자를 모시는 東宮職 등 2개 관서 뿐이었다. 직제상 일반 황족들에게는 家務를 담당할 사무관들만이 배정되어 있었고 시종의 일을 담당하는 관리는 전무했다. 수족과도 같았던 찬시의 폐지는 이왕직의 축소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경에서 영구히 상주하게 될 영친왕을 더욱더 고립시키는 조치였다.

한편 일제는 찬시를 폐지하는 대신, 정식관제로써 일본 황족의 예에 준하여 왕공족에 왕공족부육군무관을 부속시켰다. 이처럼 왕공족에 부여되었던 찬시라는 특권을 회수하고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일본 황실의 관례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재일 왕공족의 일본 사회로의 흡수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在日 公家에 대한 관리도 재일 왕가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 기존에 운현궁과 사동궁에 있던 공가 사무소와는 별도로 이건과 이우가 거주하는 동경저에 별도의 사무소가 신설되어 일본 내 공족의 활동 및 동경저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영친왕과 이건, 이우 등은 명목적으로는 각각 왕가와 공가의 수장으로 家務를 관장해야 했지만, 이들이 왕공가의 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미미했다는 점이다. 실제 왕가 및 공가 행

정은 대부분 이왕직과 이를 감독하는 조선총독부 및 궁내성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었다. 일본 내에서 제일 왕공족은 어디까지나 수동적 입장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史料

「경비관계철」李垞公妃兩殿下關係(소화4년-소화6년)

『구한국관보』

『宮内官制及附屬法規』

『大日記甲輯』(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大日記乙輯』(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순종실록』

『순종실록』부록

「왕궁가례범」

『李王宮秘史』

「李王職財産整理大要」

『李王職職員錄』

『齋藤實文書』

『朝鮮貴族列傳』

『朝鮮法令輯覽』

『朝鮮總督府官報』

『職員錄』明治41年 甲, 昭和5年

『職員錄』융희2년-융희3년

『통감부문서』

「황실전범」

2. 신문잡지류

남선일보
동아일보
반도시론
삼천리
조선
조선금만주
조선연감
조선일보
중외일보
황성신문

3. 단행본

-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 강동진, 『한국을 장악하라』-통감부의 조선침략사, 아세아문화사, 1995.
- 곤도시로스케著, 이언숙譯, 『대한제국황실비사』, 이마고, 2007.
- 국회입법조사국, 『舊韓末 條約彙纂』上,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4.
- 김명길, 『낙선제주변』, 중앙일보·동양방송, 1977.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7,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6.
- 小田部雄次, 『李方子』, ミネルヴァ書房, 2007.
- 스즈키 마사유키著, 류교열譯, 『근대일본의 천황제』, 이산, 1999.
- 이기동, 『비극의 군인들』, 일조각, 1982.
- 이방자, 이건共著, 『在日 英親王妃의 手記, 在日 李鍵公의 手記』, 新太陽社, 1960.
- 이왕은전기간행회編著, 백남철譯註, 『영친왕이은전』, 우성문화사, 1980.

齋藤子爵記念會, 『子爵 齋藤實傳』2, 齋藤子爵記念會, 1941.

정범준, 『제국의 후예』, 황소자리, 2006.

井原頼明, 『皇室事典』, 富山房, 1938.

韓詩俊, 『大韓民國臨時政府法令集』, 국가보훈처, 1999.

혼마야스코著, 이훈譯, 『덕혜옹주』, 역사공간, 2008.

4. 연구논문

金英達, 「朝鮮王公族の法的地位について」, 『靑丘學術論集』14,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1999.

박이준, 「나주 궁삼면 토지탈환운동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송우혜, 「이은의 정략결혼 연구-언론보도(1907~1920)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신명호, 「일제하 李王職과 李王家 족보」, 『한국학대학원 논문집』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96.

_____, 「일제하 高宗純宗實錄·高宗純宗國朝寶鑑의 편찬과 장서각 자료:實錄編纂參考書目錄과 國朝寶鑑編纂關係書類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79, 2000.

신조 미치히코, 「이은(영친왕)-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문제와 왕족의 양면성: 정략결혼은 왜 필요했을까?」, 『역사비평』75, 2006.

이성시, 「조선왕조의 상징 공간과 박물관」,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2004.

이승우, 「일제하 일본의 조선 왕실에 대한 인식과 李王職의 운영」, 동아대

-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윤상, 「일제하 ‘조선왕실’의 지위와 이왕직의 기능」, 『한국문화』4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 이지선, 야마모토 하나코, 「직원록(職員錄)을 통해서 본 이왕직(李王職)의 직제(職制) 연구」, 『동양음악』26,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4.
- 장석홍, 「융희황제 국상에 대한 국내외 민족언론의 인식」, 『한국독립운동사 연구』9, 1995.
- 崔長根, 「日本の 韓國皇室 抹殺과 同化政策」, 『朝鮮史研究』8, 朝鮮史研究會, 1999.
- 최혜주, 「한말 일제하 샤쿠오(釋尾旭邦)의 내한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4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 坂元眞一, 「조선왕실 자손들과 그 대한민국 국적」, 『서울국제법연구』6권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1999.
- 함한희, 「朝鮮末·日帝時代 宮三面農民의 社會經濟的 地位와 그 變化」, 『韓國學報』18, 일지사, 1992.
- 홍순민, 「日帝의 植民 침탈과 景福宮 훼손」, 『문명연지』5권1호, 한국문화학회, 2004.